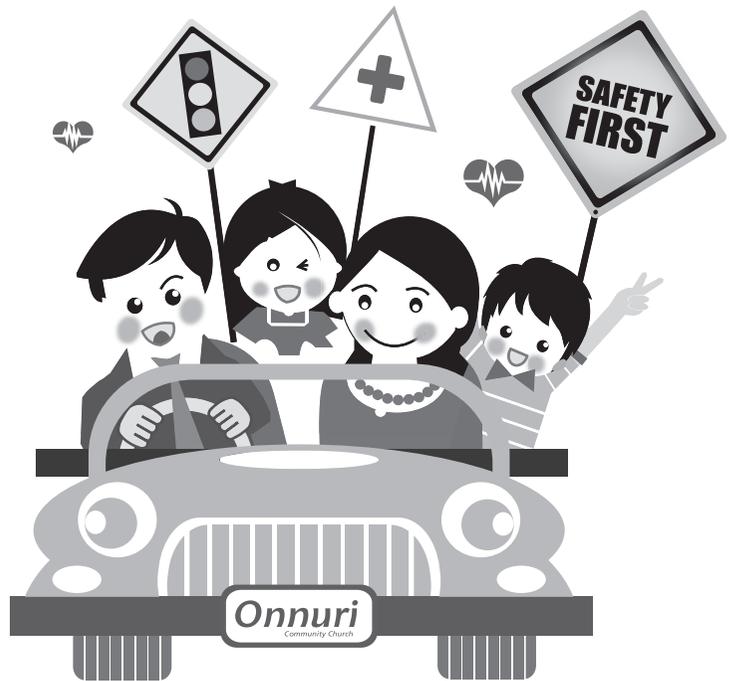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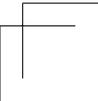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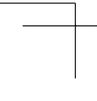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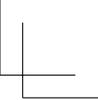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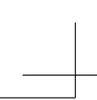


온누리교회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분과위원회



주님이 세우신 온누리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규정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교회 활동과 관련하여 사고와 재난 또는 재해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직과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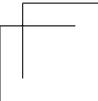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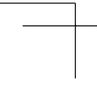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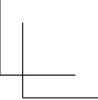
교회의 모든 리더십은 본 규정에 따라 교회시설과 성도의 교회 활동에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 규정은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황에 맞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본 규정에 대한 문의는 온누리교회 안전관리분과위원회(02-3215-3215)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8.1.1**

**온누리교회 안전관리분과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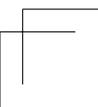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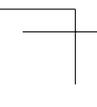
# 목 차

## 제1장 안전관리규정 및 지침

1. 안전관리규정 -----	7
2. 안전관리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 -----	12
3. 안전관리센터 관리지침 -----	13
4. 사건사고 처리지침 -----	18
5. CCTV 설치 운영 관리지침 -----	27

## 제2장 부문별 안전관리 요령

1. 예배 및 행사 -----	39
2. 시설 -----	55
3. 소방 및 방재 -----	68
4. 교통 -----	82
5. 보건 -----	87
6. 정보 -----	103



# 제1장 안전관리규정 및 지침

## 1. 안전관리규정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교회 활동과 관련하여 사고와 재난 또는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등 상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직과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온누리교회의 국내 모든 캠퍼스에 적용하고, 아웃리치 등 외부 행사에도 적용한다.

###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안전사고”란 성도들이 화재, 시설물 사고, 정보유출, 교통 사고, 보건사고 등으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거나 손실을 입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조직)

안전관리를 위한 총괄부서로 당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안전관리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캠퍼스 교회별로 안전관리센터를 둔다.

## 제5조 (안전관리분과위원회)

- ① 안전관리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 ② 안전관리분과위원회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총괄적으로 계획 및 점검하고, 각 캠퍼스의 안전관리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안전관리센터장이나 안전관리실행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한다.
- ③ 안전관리분과위원회 내에 본부총괄, 시설, 소방, 교통, 보건, 정보, 예배 및 행사 등 분야별 팀을 설치한다.
- ④ 안전관리분과위원회는 운영상의 주요사항을 당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위 운영위원회에 건의하여 승인을 얻는다.

## 제6조 (안전관리센터)

- ① 각 캠퍼스의 안전관리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상근직원 약간 명 및 안전관리실행위원회를 둔다.
- ② 안전관리센터장은 목회지원실장이나 행정목사 중에서 당회장이 임명하고, 당해 캠퍼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시, 감독, 집행하며 안전관리실행위원회를 지휘한다.
- ③ 안전관리센터장은 당해 캠퍼스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총괄적인 책임이 있다. 다만 서빙고, 양재, 양지, 부천, 수원캠퍼스의 경우에는 시설물과 관련한 안전관리책임은 온누리선교재단이 지고, 안전관리센터장은 그 외 부분에 대한 책임만을 진다.

- ④ 교회 각 부서나 사역팀과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다.
- ⑤ 상기 이외의 관한 사항은 안전관리센터 지침에 따른다.

### **제7조 [안전관리실행위원회]**

- ① 안전관리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장은 캠퍼스 대표장로 또는 장로 중에 선임하고, 그 외 위원은 장로 또는 안수집사로 선임한다.
- ② 실행위원회는 안전관리센터장을 도와 당해 캠퍼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점검, 계획, 집행한다.
- ③ 실행위원회 내에 본부 실행팀과 소방, 시설, 정보, 교통, 보건, 행사 등 분야별 실행팀을 두되, 각 캠퍼스의 규모와 실정에 따라 정한다.
- ④ 실행위원회는 안전관리분과위원회에 그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위 분과위원회나 안전관리센터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 **제8조 [협의 등]**

안전관리분과위원회나 안전관리센터장은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온누리선교재단에 협의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업무분장]**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관리분과위원회와 안전관리센터장, 안전관리실행위

위원회 및 온누리선교재단의 업무분장 범위는 [2.안전관리 부서별 주요 업무 분장]과 같다.

### 제10조 (부문별 안전관리)

- ① 안전관리분과위원회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안전관리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부문별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 시행하고 실행위원회는 각 캠퍼스의 특성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 시행한다.
- ② 교회 상근직원은 항상 안전관리규정과 관련된 각종 규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③ 안전관리분과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수시로 안전관리규정 및 관련 지침을 성도들에게 홍보, 교육하고 그 이행과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위반 사례를 발견할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실행위원회가 사역부서(팀)나 기관에 대하여 시정 또는 협조요구를 할 때는 안전관리센터장 또는 안전관리분과위원회를 경유한다.
- ④ 사건·사고 발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 제11조 (사고발생)

- 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회 직원과 성도들은 즉시 안전관리규정 및 사건사고 처리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이를 안전관리센터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한다.
- ② 교회는 위 보고 또는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

계를 완비하여 운영한다.

③ 안전관리센터장은 사고수습을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되, 필요한 경우 실행위원회나 안전관리분과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안전관리센터장은 사고 관련 사항을 실행위원회에 알리고 안전관리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12조 (보상 등)

① 교회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성도들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나 배상을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보험 등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다.

② 위 보상 또는 배상에 관한 피해자와의 협의 등 절차는 실행위원회가 주관한다.

##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변경시행일) 제10조 ④항, 제11조는 201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2. 안전관리 부서별 주요 업무 분장

[안전관리 규정 제9조 관련]

구분	담당업무	실행업무	협조기관	비고
안전관리 분과 위원회	안전관리 총괄계획 수립·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규정 마련 이행</li> <li>• 홍보 및 교육 기획·시행</li> <li>• 안전관리지침 매뉴얼작성·시행</li> <li>• 안전관리실행위원회 지원, 지도</li> <li>• 당회에 안전관리 현황 보고</li> <li>• 예산 확보 및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회</li> <li>• 온누리선교재단</li> <li>• 안전관리센터장</li> <li>• 안전관리실행위원회</li> </ul>	
안전관리 센터(장)	캠퍼스 안전관리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퍼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보수 (단, 선교재단 관리 캠퍼스는 제외)</li> <li>• 안전관리센터 운영</li> <li>• 성도의 안전관리(사고 조치 포함)</li> <li>• 안전관리실행위원회 지휘·감독</li> <li>• 예산 확보 및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분과위원회</li> <li>• 안전관리실행위원회</li> <li>• 온누리선교재단</li> <li>• 캠퍼스 각 부서, 사역팀</li> <li>• 대외 유관기관 (구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li> </ul>	
안전관리 실행 위원회	안전관리 활동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센터장의 업무 조력</li> <li>• 캠퍼스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안전관리실행매뉴얼 작성·시행)</li> <li>• 필요 예산 확보 조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센터장</li> <li>• 안전관리분과위원회</li> </ul>	
온누리 선교재단	교회재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법에 따른 규정 이행 및 책임</li> <li>•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보수</li> <li>• 예산 확보 및 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회</li> <li>• 안전관리분과위원회</li> <li>• 안전관리센터장</li> <li>• 대외 유관기관 (구청,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li> </ul>	서빙고 양재 양지 부천 수원

### 3. 안전관리센터 관리지침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안전관리규정 제6조에 의거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에 설치된 안전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업무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상근직원)

- ① 안전관리센터에는 상근직원이 상주하여 언제나 긴급전화나 방문신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직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이를 안전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보고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③ 직원은 안전용품의 사용법, 안전사고 시 대처요령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항상 숙지하고, 평소 안전예방 활동과 감시 및 점검 활동을 철저히 한다.

#### 제3조 (분야별 관장업무)

안전관리센터장은 안전관리실행위원장과 협력하여 다음의 분야별 안전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지휘 및 감독한다. 다만 서빙고, 양재, 양지, 수원, 부천캠퍼스의 경우에는 시설물과 관련한 안전관리책임은 온누리선교재단이 지고 안전관리센터장은 그 외 부분에 대한 책임만을 진다.

### ① 시설안전

가. 시설 현황관리

나. 시설 점검관리상세(요령)규정 마련

다. 시설 안전점검 수행 및 결함 발견시 개선방안 수립조치

라. 대상시설 :

- 1) 본 구조물, 부속시설물, 옹벽, 저수조, 정화조, 안전설비, 장애인 시설
- 2) 수변전시설, 옥내 간선시설, 전력기구, 통신시설, 방송설비, 엘리베이터, 교통전기시설, 보안등, 피뢰시설 등
- 3) 보일러, 냉난방시설, 기계장치, 환기시설, 상·하수도시설, 기계식 주차시설 등
- 4) 가스배관, 차단밸브, 누설감지기시설 등

### ② 소방안전

가. 소방시설 현황관리

나. 소방시설 점검관리상세(요령)규정 마련

다. 소방훈련 및 대피훈련 상세계획수립

라. 해당시설 안전점검 수행 및 결함 발견 시 개선방안 수립조치(예배 중 비상사태 발생 시 소화 및 대피유도는 예배지원팀이 주도적으로 수행)

### ③ 교통안전

가. 대상시설 현황관리

나. 대상시설 점검관리상세(요령)규정 마련

다. 주차장 안전관리, 주차요원 안전관리 등

라. 해당시설 안전점검 수행 및 결함 발견 시 개선방안 수립 조치

④ 보건안전

가. 대상시설 현황관리

나. 대상시설 점검관리상세(요령)규정 마련

다. 해당시설 안전점검 수행 및 결함 발견 시 개선방안 수립 조치

라. 관련 업무 :

- 1) 식당 위생관리, 방역, 수질관리
- 2) (예배 시)응급환자 조치, 사고조치
- 3) 공기질 관리, 실내온습도 관리, 유아시설 등

⑤ 정보안전

가. 전산정보시스템장비 현황관리

나. 대상시설 점검관리 상세(요령)규정 마련

다. 해당시설 안전점검 수행 및 결함 발견 시 개선방안을 수립 조치

⑥ 예배 및 행사안전

가. 연간 각종 예배 및 행사 현황관리

나. 연간 각종 행사별 점검관리상세(요령)규정 마련

다. 주요 행사장 등 안전점검 수행 및 문제점 발견 시 개선방안 수립 조치

라. 관련 업무 :

- 1) 옥내외 단체예배, 국내 아웃리치, 워크샵, 수련회 포함
- 2) 행사 계획서, 이동수단, 현장(지) 현황 확인 등

### 3) 주요 인사 경호 등

#### **제4조 (안전관리실행위원회)**

안전관리실행위원회는 안전관리센터장의 지휘를 받아 본부, 시설, 소방, 교통, 보건, 정보, 예배 및 행사 등 각 분야의 안전업무를 돕고, 예배지원팀 및 선교재단과 협력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사고 시 신속, 정확한 대처로 손실을 최소화한다.

#### **제5조 (예산 등)**

- ① 안전관리센터장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구입, 수선 등 비용을 산정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이를 집행하며, 필요시 보험 가입 등을 요청한다.
- ② 안전관리실행위원회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여 안전관리센터장에게 신청하고 그 집행을 점검한다.

#### **제6조 (교육 및 훈련)**

안전관리센터장은 교회 직원에 대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성도들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비상시 대피요령 등 안전을 위한 홍보, 교육 활동을 실시한다.

#### **제7조 (협력)**

안전관리센터장은 대내적으로는 당해 캠퍼스 내의 예배섬김팀, 예배지원팀, 선교재단본부와 협력을 유지하고, 대외적으로는 지역소방서, 경찰

서, 인근 병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비상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사건사고 처리지침

### 제1조 (목적)

안전관리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교회 안팎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의 처리에 관한 초기 대응 및 사후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을 밝히고, 이를 수행할 교회 조직의 담당 구조와 처리 과정을 정하여 돕으로써, 신속하고 원만한 처리로 교회와 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후 유사한 사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 (대상)

- ① 교회 시설의 노후, 관리 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교회가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주차구역 안에서의 접촉 사고, 교회가 운영하는 식당, 카페에서 제조 판매된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배 등의 교회 행사 중 응급환자 발생 사고는 모두 이 지침에 정한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 ② 교회 안팎에서 교인들 사이에 또는 교회직원과 교인 사이에 발생한 각종 분쟁 사건은, 이에 대해 교회의 책임이 문제되거나, 민원 제기 또는 민형사상 제소로 사회 사건화 되거나 언론에 기사화되어 교회의 대내외적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의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 ③ 국내외 아웃리치 중 사건사고에 관해서도 이 지침에 준하되 현장의 구체적 상황 변수를 적극 고려하여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한다.
- ④ 화재, 지진, 폭발 및 납치, 테러 등 대형 재난사고는 행정안전부 등

공적기관의 지침 및 이를 기본으로 하는 별도의 안전관리분과위원회 매뉴얼에 따른다.

### 제3조 (사고처리 담당조직)

- ① 화재, 지진, 폭발 등 대형 재난사고는 전체 교회 단위에서, 아웃리치 중 사건사고는 행사 주관팀 소속 캠퍼스에서 그 밖의 각종 사건사고는 발생 캠퍼스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캠퍼스 안전관리센터장은 캠퍼스 사건사고 처리의 책임자가 되어 사고 발생 보고를 받은 때부터 처리종결, 사후보완, 재발방지 활동까지의 모든 과정을 주관한다.
- ③ 안전관리센터장의 자문을 위하여 캠퍼스별로 법률전문가, 심리상담가, 의료전문가, 보험보상처리 기타 사고처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둔다. 안전관리실행위원이 겸직할 수도 있다.
- ④ 안전관리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도 법률, 의료, 심리상담, 보험보상, 건축, 소방, 교통 등 각종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원으로 두어 캠퍼스 안전관리 자문단을 지원한다.
- ⑤ 안전관리센터장은 사안의 경중, 교회에 미칠 영향력, 피해의 규모 및 피해자의 영적 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신을 포함한 캠퍼스의 교역자 또는 피해자 소속공동체 혹은 사역팀의 담당 교역자 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교역자를 지체 없이 ‘사고담당교역자’로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그 사건사고에 관해 교회를 대표하여 피해자 위로, 면담, 합의 등의 처리 과정을 [별지 1] 사건사고 처리 조직도를 참조하여 수행하

계한다.

#### **제4조 (사고담당교역자)**

① 사고담당교역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피해자 등 당사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그 입장을 공감해 주면서 위로를 한다.

나. 다만 다른 이해당사자가 있거나 대립적 당사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전까지 절대로 사안을 단정 짓거나 결론을 암시하는 언행을 삼간다.

다. 대립하는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쌍방의 감정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각각 분리해서 면담하고, 성급하게 영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지양한다.

라. 중재나 합의는 반드시 교회에서 결정된 보험, 보상의 범위 안에서 진행한다.

② 사고담당교역자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등 사안을 파악한 결과 사건처리에 전문적 식견이나 설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문단내 전문가로부터 사안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직접 자문 받거나 피해자 등 당사자와의 상담, 면담을 주선했을 수 있다.

#### **제5조 (사건사고 처리단계)**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아래 단계별로 처리절차를 수행한다.

① 현장조치 및 보고

- ② 피해자 위로 및 추후 보상 등의 절차 안내
- ③ 책임 유무 및 배상 또는 보상 범위 판단
- ④ 합의, 중재, 또는 보상 처리
- ⑤ 사후보완 및 재발방지 활동 등

## 제6조 (현장조치 및 보고)

예배 시에는 예배팀장, 주차장 사고는 주차팀장, 식당, 카페에서는 해당 운영팀장, 기타 모임 시 사고는 그 모임 주관자(팀장)가 현장책임자가 되어 현장을 지휘하고 보고 한다.

- ① 위중한 인사사고 시에는 당직 의사가 초진을 하고 응급 시에는 자동 심장충격기를 활용하는 등 부상자 응급처치를 하게 하고 119를 불러 병원 이송 조치를 한다.
- ② 경미한 인사사고나 대물사고 시에는 현장에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귀가시키거나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킨다.
- ③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여 교회 책임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거나, 제3의 가해자가 있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할 수 있도록 상호 연락처를 파악하고 현장 합의를 하거나 향후 합의 혹은 보험처리를 하도록 안내를 하고 종결한다.
- ④ 교회에 책임이 있다고 일응 보이는 경우에도 책임 소재를 단정 짓지는 말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받은 후 교회에 즉시 보고하여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다고 안내한 다음 귀가시킨다.
- ⑤ 사고확대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접근 못하도록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임시조치를 하고 현장을 수습한다.

⑥ 캠퍼스 안전관리센터장에게 [별지 2] 보고서 양식에 따라 사건사고 경위를 보고한다.

## 제7조 (피해자 위로 및 절차 안내)

① 현장조치 후 사고 보고를 받은 안전관리센터장은 사고담당교역자를 지명하고, 사고담당교역자는 사고 후 가급적 신속하게 피해자 및 가족 등 관련 교인을 전화 또는 심방을 통하여 위로한다.

② 사고담당교역자는 피해보상에 관하여서는 교회의 책임 유무, 배상이나 보상의 범위 등을 안전관리센터의 검토·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확정적으로 언급해서는 아니 되며, 안전관리센터장의 지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③ 안전관리센터의 검토 결과 교회 책임이 없는 피해자의 전적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위로하고 종결한다. 치료비나 수리비 등이 보험 담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제8조 (책임 등의 판단 및 보상 처리)

① 보험 담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전액 보험사를 통한 보상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보험 면책이거나 담보 부족 시에는 2항과 같이 결정된 교회의 배상 또는 보상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상처리를 한다.

② 교회의 책임 유무, 배상 또는 보상의 범위 및 그 내용 등은 안전관리센터장이 안전관리자문단의 전문가 의견 및 사고담당교역자와 선교재단

담당자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보험 가입 및 담보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성향이나 상태, 사건사고가 교인들 또는 교회에 미칠 영향 등 목회적 판단까지 겸하여 이를 결정한다.

### **제9조 (사후보완 및 재발방지활동)**

- ① 안전관리센터장은 보험담보 미가입이나 부족 시에는 교회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가입 또는 변경절차를 추진하고 사고현장의 원인별로 시설보수, 안전표지판 부착 등 보완조치를 하며 안전교육 등 안전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 ② 안전관리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건사고의 사례를 전파하고 동일 유사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교육한다.

### **제10조 (아웃리치 중 사고의 특례)**

- ① 아웃리치 중 사건사고 발생 시에는 그 아웃리치를 주관하는 팀장이 현장책임자가 된다.
- ② 현장책임자는 외부인들의 오해나 추측으로 부정확한 사고 정보가 전파되지 않도록 팀원들의 언동을 조심시킨다.
- ③ 국외 아웃리치의 경우 현장책임자는 이천선교본부에 보고하고, 사안의 경중을 분별하여 해당 국가 주재 한국 영사관에도 보고한다.
- ④ 사고담당교역자는 신속하게 현장책임자와 통화하여 행사 계속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귀가 또는 귀국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⑤ 그 밖에 아웃리치의 안전점검 및 사건사고 시 상세 처리요령은 안전

관리분과위원회의 해당 지침을 참조한다.

### **제11조 (분쟁 사건사고의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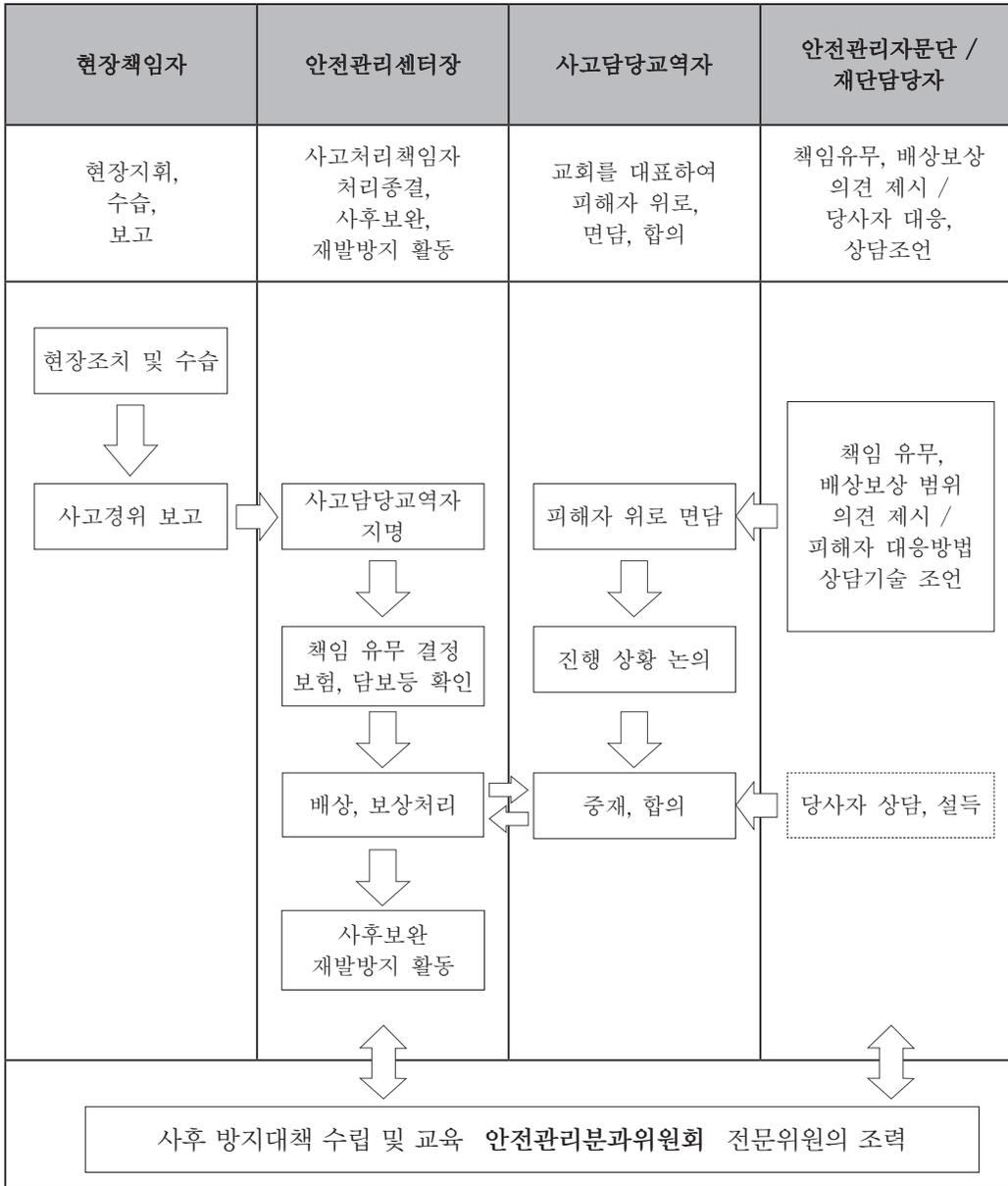
- ① 교인과 교인 또는 교회 직원과 교인 간의 분쟁 사건사고는, 해당 당사자로부터 또는 사고 현장에 있었거나 사건 내용들은 다른 교인들로부터 이를 인지한 교회직원 또는 교역자가 지체 없이 [별지 2] 보고서 양식에 따라 이를 안전관리센터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지명받은 사고담당교역자는 해당 사건사고가 와전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그 인지된 경로를 알아보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 ③ 사고담당교역자는 반드시 사건사고 양쪽 당사자를 별도로 만나 각자의 입장을 예단 없이 경청하도록 하되, 교역자의 초기 대응이 향후 사건의 전개방향이나 교회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영향이 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안전관리자문단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전문가와 함께 상담할 기회를 얻도록 한다.
- ④ 사고담당교역자 등 모든 관계인은 사건사고를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지켜주고 사후에도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사건사고 처리 조직도



[별지 2]

## 사건사고 경위 보고서

수신 : [○○○ 온누리교회] 안전관리센터장

참조 : [○○○ 온누리교회] 안전관리실행위원장

사고일자	사고장소
피해자 당사자	성명 : 성별 : (남, 여)                      연락처 : 연령 : 교회소속 :
사건사고 내      용	
발생원인	
조치내용	* 조치 의뢰인이나 조치자의 성명을 기재바랍니다.
특이사항	

년    월    일

작성자 :

## 5. CCTV 설치 운영 관리지침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안전관리규정 제1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교회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대 테러, 화재, 각종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 관리가 곤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회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 제2조 (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온누리 교회(이하 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 ② CCTV로 수집 처리되는 일체의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기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CCTV 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 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을 말한다. “CCTV” 라 함은 령 제3조 1항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⑤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본인 테이프, 본인 디스크, USB 등 전자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⑥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 저장, 편집, 삭제, 수집, 생성, 기록, 보유,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제4조 (책임자 및 관리자 운영)**

① 교회 CCTV 시설 운영관리부서는 온누리선교재단이 관리하는 캠퍼스는 보안관리팀으로 하며, 타 캠퍼스는 안전관리센터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책임자는 안전관리센터장으로 하며 책임자는 교회 CCTV 설치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③ 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5조 (CCTV 설치 운영)

- ① CCTV 카메라는 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 등에 방범, 화재,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적절한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 ② CCTV 모니터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 ③ 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각 시설별 내·외부와 출입구, 주차장 등에 한정하며 필요 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④ CCTV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 전원을 사용한다.
- ⑤ 월 1회 녹화장치 및 카메라 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 ⑥ 관리자는 수시로 녹화장치 및 카메라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전문 기술 업체(인)로 하여금 월 1회 이상 CCTV 시스템 전체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도록 한다.

## 제6조 (녹화물의 저장)

- ① 녹화된 데이터는 일정 기간(60일) 하드디스크에 보관이 되며 별도로 다른 곳에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다.
- ② 음성정보는 저장하지 않는다.

## 제7조 (CCTV 의 관리)

- ① CCTV의 주장치는 방재실에 설치하고, 제 4조의 책임자 이외에는 열람, 재생할 수 없으며 열람 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별지 1]의 개인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 재생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점검기록을 [별지 2]에 기록 관리한다.

③ 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복사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④ 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시 및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한다.

## 제8조 (안내판 부착)

① 교회 성도 및 출입자에게 CCTV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각 호의 사항과 교회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설치목적

나. 촬영범위 및 시간

다. 관리자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나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설치 사실을 공지하고 중요시설의 경우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 제9조 (화상정보 보호원칙)

①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화상정보를 수집한다.

② 제1항의 설치목적에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화상

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

### **제10조 (화상정보의 관리)**

CCTV 시스템은 CCTV 카메라, DVR 및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 촬영 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하되 필요하면 일정 시간만 촬영할 수 있다.

### **제11조 (화상정보 열람 재생장소)**

- ① 열람 재생 장소는 관리 책임자가 지정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곳으로, 관리책임자가 정하는 곳(예, 방재실)으로 한다.
- ② DVR 및 서버가 설치된 장소는 제한구역으로 정한다.
- ③ 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디지털 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를 사용하여 저장, 열람, 검색, 재생, 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제한구역에 개인정보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한 경우에는 제한구역 출입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제12조 (화상정보의 제한)**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제공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 주소 불명 등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⑤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13조 (열람 등의 요청)**

① 정보주체는 관리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처리를 규칙 별지 서식의 문서로 관리자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규칙에 따른 결정 통지서를 송부(통신망 포함) 한다.

### **제14조 (화상정보의 제공)**

① 화상정보의 열람요청은 요청자의 소속, 인적사항, 열람목적을 기재하여 관리자와 교회 안전관리 센터장의 동의를 득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화상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열람, 공유, 거부를 포함 한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③ 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규칙에 따른 개인정보로 이용 시 개인 영상 정보관리 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 제15조 (정보주체의 권리)

- ① 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가. 범죄 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경우

다.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라. 기타 교회 규정 및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제16조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된 보유 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삭제하고, [별지 3]의 CCTV 영상물 파일 삭제, 파기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다만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보유 기간을 화상정보의 수집 후 60일 이내로 한다.

##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

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제18조 (수집의 제한)**

- ①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
- ② 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제19조 (설치현황)**

CCTV 설치장소 현황은 [별지 4]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현황을 유지한다.

### **부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 예정 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 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이용 제공 열람 파기										
2	이용 제공 열람 파기										
3	이용 제공 열람 파기										
4	이용 제공 열람 파기										
5	이용 제공 열람 파기										
6	이용 제공 열람 파기										
7	이용 제공 열람 파기										
8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별지 2]

## CCTV 안전 점검표

년    월    일

점검자 :

번호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결과
1	평균 녹화량을 기준으로 상시저장 일수는 이상이 없는가?		
2	CCTV 관리 대장은 정상 운용되는가?		
3	녹화상태의 확인 요청시 확인요청서를 작성하고, 운용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4	DVR 전원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5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완이 유지되고 있는가?		
6	24시간 모션 녹화가 이루어지는가?		
7	CCTV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등 설비 기기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8	유관기관의 협조 요청에 운용책임자의 승인하에 협조하고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 제2장 부문별 안전관리 요령

### 1. 예배 및 행사

#### 제1조 (목적)

온누리교회 각종 예배와 집회, 아웃리치 등 행사 진행 시 성도들의 안전을 도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있다.

#### 제2조 (적용범위)

- ① 교회 내외 예배
- ② 단체집회 등의 안전점검 및 시행 계획
- ③ 각종 워크샵, 수련회 등 야외행사 시 안전점검 및 시행계획
- ④ 국내외 아웃리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행계획
- ⑤ 각종 행사를 위한 숙소, 이동수단의 안전점검 및 시행계획

#### 제3조 (예배안전)

- ① 각 부 예배팀장은 예배 섬김 시 안전관리책임자가 된다.
- ② 예배 안전관리책임자는 준비모임 시 예배 봉사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③ 예배 안전관리책임자는 담당 의사를 확인한다.
- ④ 예배위원과 봉사자들은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에 따라서 성도들을

안전하게 대피 유도한다.

- ⑤ 안전관리책임자는 예배 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선조치 후 사건 사고처리지침에 따라 안전관리센터장에게 보고한다.
- ⑥ 안전관리책임자는 보조 의자 배치 시 비상 대피로를 확보한다.

#### **제4조 [헌금 계수 안전수칙]**

- ① 계수를 시작하기 전에 겹옷 및 가방, 휴대폰 등 개인 소지품은 옷장에 보관한다.
- ② 계수를 시작하면 마칠 때까지 외부 출입을 하지 않는다.
- ③ 계수 중 알게 된 헌금관련 개인사항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한다.
- ④ 계수 중 계수와 관련된 사항 외의 대화는 가급적 자제한다.
- ⑤ 계수가 완료되면 각종 계수 용구 등을 정리 정돈하여 다음 계수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⑥ 계수실 출입 시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⑦ 개인적인 용무로 계수실 출입을 하지 않는다.

#### **제5조 [행사기본사항]**

- ① 행사책임자는 사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 ② 행사책임자는 모든 참여자에게 행사내용 및 진행계획을 전달하고 안전관리자는 행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 ③ 안전관리자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전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④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요령을 숙지하고 비상약품, 안전장비, 의료봉사자 등을 확보한다.

## 제6조 [행사세부사항]

① 국내행사(국내 아웃리치, 수련회, 워크숍 등)

가. 숙소 및 행사장 점검사항

- 1) 정식 허가를 받은 장소 여부
- 2) 숙소 현황확인 : 남, 녀 구분 및 아동 등을 고려한 장소 여부
- 3) 취사장, 세면장, 화장실 등의 위생상태
- 4) 태풍, 폭우 등으로 인한 하천범람 및 산사태로 인한 위험요소
- 5) 전기,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여부
- 6) 행사지원시설 (조명, 음향, 무대 등)의 안전 여부
- 7) 야생동물 출몰 여부
- 8)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의 접근성
- 9) 현지 연관 교회 또는 관리자와의 협력 여부

나. 이동수단 점검사항

- 1) 임차 버스의 차령 5년 이하 여부 및 운전자 적정성
- 2) 임차 차량의 적정보험 가입 여부

다. 기타 점검사항

- 1) 물놀이 안전수칙, 가스안전수칙, 여름 폭염에 따른 일사병 등에 대한 예방수칙에 대한 사전교육 여부
- 2) 식중독 예방, 유해 및 위험 동물(말벌, 산돼지, 뱀 등)에 대한 대비

방법 등 사전교육여부

② 해외행사(해외 아웃리치 등)

가. 현지 협력기관에 대한 점검

- 1) 현지 협력기관의 정체성 확인(선교단체 또는 NGO 등)
- 2) 현지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망 확보 및 운영역량
- 3)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능력
- 4) 아웃리치의 목적 및 일정 등의 사전 조율

나. 아웃리치 팀 구성 및 사전교육에 대한 점검

- 1) 아웃리치의 목적 및 특성, 내용 등에 대한 충분한 숙지
- 2) 위기대응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숙지
- 3) 현지 기후 등 환경에 대한 사전 정보 확보
- 4) 아웃리치 팀의 리더그룹의 분야별 적절한 조직구성 및 교육 훈련
- 5) 개인 건강에 대한 사전 확인

다. 아웃리치 팀의 안전관리체계 점검

- 1) 아웃리치 팀의 자체 안전관리 조직 구성(팀리더 및 안전관리자 선임)
- 2)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소그룹 리더 및 팀 편성(조당 3~4명)
- 3) 팀별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대응방법 숙지
- 4) 아웃리치 기간 중 리더십 및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순종 교육
- 5) 안전에 대한 예방 및 위기 조치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 교육
- 6) 현지 협력기관의 행동지침에 대한 철저한 준수

라. 출국 전 준비사항 점검

- 1) 건강진단, 예방접종 시행 및 개인별 복용 의약품 준비
  - 2) 개인별 신상에 대한 자료 확보(비상연락망, 혈액형, 여권사본 등)
  - 3) 여행자보험 일괄 가입
  - 4) 서약서, 각서 등 필수적인 서류 작성
  - 5) 현지의 여행 안전정보 확인
- ③ 각종 행사의 점검사항은 별지에 첨부된 부문별 점검표를 활용한다.

[별지 1]

## 아웃리치 및 수련회 안전점검 항목

[건물]

점검항목	예	아니오
①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② 단체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음향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③ 객실배치도, 출입구, 대피로 등은 확인하셨습니까?		
④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⑤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저수지, 웅덩이, 계곡, 절벽, 인접도로 등)		
⑥ 참가자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⑦ 수련회 시설의 사업자등록증과 영업배상책임보험증서가 배치되어 있습니까? (서류확인 및 서류 첨부-사본)		
⑧ 수련원 자체의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계획(보건실 운영계획 등)은 있습니까?		
⑨ 베란다 등 위험한 곳에는 위험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까? (없다면 미리 준비하였다가 행사 당일 붙일 것)		
⑩ 건물 주위에 별집은 있습니까?		

[내부시설]

점검항목	예	아니오
① 참가자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원활하게 배치 가능한가?		
② 생활이 쾌적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는가? (객실별 인원배치 적정인가)		
③ 설치물들은 안전한가? (가구, 유리창문, 방충망, 에어컨, 선풍기, 가스레인지, 세면대 등)		
④ 숙소 내부에 선정적인 포스터나 유인물이 부착되어 있는가?		
⑤ 외부의 소음이 잘 차단되는가?		
⑥ 문단속이 용이한가?		
⑦ 방, 복도, 화장실, 층계, 외부에 조명은 잘 설치되어 있는가? (야간 이동시 위험할 경우)		

## [기타 시설 안전]

점검항목	예	아니오
① 참가자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② 유리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③ 곳곳에 날카로운 모서리나 못 등이 튀어나와 있지 않은가?		
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⑤ 참가자들이 무단으로 창문을 넘어 다닐 위험이 있는지는 않은가?		
⑥ 화기통제(전기 레인지 등)가 가능한가?		
⑦ 단체 집회 장소(강당)에 냉난방 시설은 있는가?		
⑧ 어린이 놀이터가 있다면 안전한 시설인가?		
⑨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 [위생]

점검항목	예	아니오
①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깨끗한가?		
②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청결한가?		
③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④ 방,복도,강당,건물주변 등의 위생상태는 청결한가? (곰팡이,거미줄,먼지,벌레 등)		
⑤ 모기,벌레 등 위생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까?		

## [식당]

점검항목	예	아니오
①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② 음식의 질이 참가자들의 선호에 적합한가? (가격이 낮으면 식사의 질도 낮아진다. 적절한 가격대의 식사를 선택해야 한다)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합니까?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⑤ 식당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가?		
⑥ 식수대 및 물, 행주, 도마, 식기의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⑦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허가증을 확인하십니까? (신고증, 허가증 사본 첨부)		
⑧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자격증을 확인하십니까?		

## [프로그램 안전]

점검항목	예	아니오
① 활동장소(산,운동장,수련원밖,바다,강,냇물,수영장)의 주변 위험요소를 확인하였습니까? (수영금지구역,물의 깊이,조류속도,파도높이,물 때)		
②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및 안전장비(구명동의,구명튜브 등)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③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응급구조체계(인근의료시설 파악 등)는 확인하였습니까?		
④ 장소의 선정이 참가자들의 연령 및 신체조건에 맞습니까?		
⑤ 물놀이 사용장비(구명동의 포함)의 점검상황과 내구연한 등 기본적인 안정상태 점검내역서를 확인하였습니까?		
⑥ 적격업체 여부(수상레저 사업자등록증,종합보험 가입증명서,교육요원의 자격 등)는 확인하였습니까?		
⑦ 갯골과 같은 위험요소는 확인하였습니까?		
⑧ 야외 프로그램진행시 화재위험(캠프파이어,불꽃놀이)이 있는 장소는 아십니까?		

## [물놀이 안전]

점검항목	예	아니오
① 활동장소(바다,강,냇물,수영장)의 주변 위험요소를 확인하였습니까? (수영금지구역,물의 깊이,조류속도,파도높이,물 때)		
② 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및 안전장비(구명동의,구명튜브 등) 비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③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응급구조체계(인근의료시설 파악 등)는 확인하였습니까?		
④ 사전 안전교육(위험지역 안내, 물 속에서 장난 금지 등) 및 입수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였습니까?		
⑤ 안전장비(구명동의) 착용 여부는 확인하십니까?		
⑥ 안전요원이 물놀이장 곳곳 배치되어 있습니까? (안전 요원 및 교사) (수영장내 안전요원,수영장밖 안전요원, 확성기 및 호루라기 준비)		
⑦ 입수 시간 준수(식사 후 입수 시간 준수 포함)는 하였습니까?		
⑧ 체험 당일 일기예보는 확인하였습니까?		
⑨ 바다의 경우 만조시간은 확인하였습니까?		
⑩ 갯골 주변에 참가자들이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⑪ 참가자들이 지정된 체험 장소를 벗어나 활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외부 집회 · 공연 관람 안전점검]

※(계)는 계획단계의 체크사항, (당)은 행사당일 체크사항

점검항목	예	아니오
① (계)재난 발생(화재 등)에 대비한 대피로와 출입구 상황을 확인하였습니까?		
② (계)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집회장에 사용되는 불꽃,기타 인화물질에 대한)		
③ (계)인근 의료시설 위치는 확인하셨습니까?		
④ (계)안전요원 조식을 하였으며 현장관리 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⑤ (계)전시공간 또는 관람석 내외 소화기 배치와 작동유무는 확인하셨습니까?		
⑥ (계)집회 장소 내 비상유도등의 센서의 작동상태는 확인하셨습니까?		
⑦ (계)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사고예방교육(행동요령과 비상구 안내) 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⑧ (계)안전지도 및 관리계획 수립 시 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피로와 출입구 안내요원 배치 계획을 포함하셨습니까?		
⑨ (계)재난 시 대피계획에 따른 시뮬레이션(연습)을 하였습니까?		
⑩ (계)대규모 집회나 전시의 경우 정전사태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⑪ (당)안전지도 및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안전지도 요원이 적재적소에 배치 되어있습니까?		
⑫ (당)대형 집회(전시, 공연) 시 공동체 또는 위원회별 책임자를 배치하여 현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⑬ (당)입 · 퇴장 시 뛰거나 앞사람을 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 [별지 2]

### 해외 아웃리치 안전 요령

#### ① 해외 아웃리치 점검 관리 기본사항

##### 가) 협력 필드 팀의 관리체제와 역량 점검

- 현지 팀이 NGO인지 선교단체인지 확인(제한지역에서의 단체 특성과 정체성 문제)
- 현지 팀은 효과적인 정보망을 가지고 현지체제 운영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 위기관리에 대한 대응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팀인가?(위기예측과 비상대책)
- 현지 팀이 방문 팀의 사역 내용과 사역일정을 사전에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준비 단계부터 현지 팀과 충분한 정보교환, 긴밀하게 협의하는 의사소통 체계인가?

##### 나) 방문 팀의 구성과 오리엔테이션

- 사역의 특성과 목표, 내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
- 현지의 기후, 주변 환경과 구성원의 건강 등 개인적인 여건을 객관적으로 고려
- 사전에 사역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사역 관련 교육, 훈련
- 사전에 필드 팀과 협의된 위기관리 수칙에 대해 교육, 훈련
- 팀의 리더십 그룹(팀 리더 + 조장/ 분야별 위기관리 담당)이 준비와

훈련에 팀워크를 잘 이루고, 효과적인 준비 철저

다) 방문 팀 자체의 위기관리 대책

- 팀 자체적인 위기관리 체제 구성(CMT: 팀 리더/ 통신, 연락업무 (대변인)/ 안전요원/ 기록담당/ 케어담당)
- 효율적인 팀 운영과 위기관리를 위해 3-4명 단위로 조 편성 및 조별 리더 임명
- 구성원들에게 현지 팀의 가상위기 시나리오에 따른 비상계획(CP) 숙지 철저
- 현지 팀 요청의 현지 행동지침을 철저하게 준수
- 사역 기간 중에는 조장, 전체 리더십의 지시에 절대적 순종
- 효과적인 위기관리는 오직 위기에 대한 회피와 사전예방
- 필드에서 위기 발생 시 일종의 전시 비상체제로 전환

**[해외 아웃리치 체크항목]**

점검항목	예	아니오
① (계)해외여행 안전국가인지 확인하셨습니까?		
② (계)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셨습니까?		
③ (계)팀 자체적인 위기관리 대응 체제를 구성하셨습니까? (안전요령 참고)		
④ (계)현지의 기후를 확인하셨습니까?		
⑤ (계)참가자들의 건강을 체크하셨습니까?		
⑥ (계)구급약품은 구비하셨습니까?		
⑦ (계)해당국가 여행에 필요한 예방접종은 하였습니다습니까?		
⑧ (계)개인신상 파일은 작성하셨습니까? (안전요령 참조)		
⑨ (계)서약서,손해배상청구 불제기 각서를 작성하셨습니까?		
⑩ (계)안전교육 계획에 따른 실제 교육을 참가자 전원에게 실행하였습니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행동요령 교육)		

## ② 특별여행경보제도

### 가) 개요

- 여행자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여행 안전정보 제공에 초점을 둔 "여행경보"와는 달리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

### 나) 경보 단계

- 특별여행주의보(특별여행경보 1단계)
  - 여행경보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1·2단계인 경우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 "여행 제한"(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취소 혹은 연기)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
- 특별여행경보(특별여행경보 2단계)
  - 여행경보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철수 권고"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

### 다) 발령 요건

- 해당국가의 치안이 급속히 불안정해지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발령하며 "특별여행경보" 발령 국가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 조정을 별도로 실시하지는 않음

### 라) 발령 기간

- 발령 기간은 기본 1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됨

## [여행경보제도]



### ③ 테러상황별 행동요령

#### [폭발물이 발견된 현장 시]

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면서 폭탄이 발견된 지점의 반대 방향 계단으로 즉시 대피한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계단의 한쪽만을 이용(좌측통행)하여 폭발물 처리팀이나 소방관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휴대전화·라디오·무전기 등은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는 안전거리(붕괴: 건물 높이 이상, 폭발: 500m 이상) 밖으로 대피한다.

라. 대피경로에도 제2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대피한다.

마. 대피 도중 폭발물이 터지면 비산·낙하물을 피하는 데 유의한다.

#### [총격 테러 시]

가. 총기 난사 때 일단 엎드린 후 동정을 살피는 것이 최선이다. 항상 낮은 자세(포복 자세)를 유지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119에 신고한다.

[억류, 납치 시]

- 가. 납치 감금 시, 일단 순응하고 탈출 가능성이 크지 않으면 탈출하지 않는다.
- 나. 답변은 되도록 짧게 자연스러운 자세로 대답하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
- 다. 외부에서 구출을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므로 절망감을 느끼지 말고 탈출로 등 자신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야 한다.
- 라. 눈을 가리면 주변의 소리·냄새·피랍로 경사와 거리·범인 음성 등 기억한다.
- 마. 구출 작전이 전개될 때는 즉시 옆드려야 한다.

[생물 테러 의심 물건 발견 시]

- 가. 물건(물체)는 건드리지 말고 즉시 자리를 피한 후 신고한다.
- 나. 실내에서 열었을 경우에는 창문과 문을 모두 닫고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며 에어컨·환기시설 등 작동을 중지시킨다.
- 다. 의심 물질이 날릴 염려가 있을 경우 옷, 신문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덮어 둔다.
- 라. 방독면을 찾아 쓰거나 손수건 또는 휴지 여러 장 이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고 현장을 즉시 벗어난다.
- 마. 목욕을 하고 입었던 옷, 신발 등은 소독 후 폐기한다.
- 바. 생물테러 작용제는 치료제가 있으므로 오염된 후에도 침착하게 행동한다.

[화학 테러 발생 시]

- 가.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한다.
- 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옷으로 피부를 감싸 노출을 방지한다.
- 다. 실외에서는 바람을 안고 이동하되 높은 곳으로 대피한다.
- 라. 오염된 장소가 지하철, 건물 등 실내공간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 마. 차량으로 사건 현장을 이동 시에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히터는 켜지 않는다.

[방사능 테러 발생 시]

- 가. 라디오, TV 등을 통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나. 건물 내 방사능 유출 경고가 있으면 방사능이 오염되지 않은 건물로 대피한다.
- 다. 건물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실내에 머문다.
- 라. 건물이나 대피소에 있는 경우에는 창문을 잠그고 에어컨·히터·환풍기를 끕니다.
- 마. 대피시에 음식물 지참이나 애완동물 동반은 절대로 금지한다.
- 바.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오염된 옷을 벗고 온몸을 깨끗이 씻는다.

[우편물 테러 대처 시]

- 가. 의심 우편물을 최초 발견한 경우
  - 1) 즉시 119에 신고한다.
  - 2) 냄새를 맡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우편물을 내려 놓는다.

3) 흔드는 등 충격을 주지 말고 라이터와 같은 물질을 가까이하지 않는다.

4) 얇은 줄이나 선은 당기거나 자르지 말고 휴대전화 등 전자파 발생 방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 나. 우편물 개봉 후

1) 사제폭탄 이용 우편물 개봉 시에는 즉시 그 장소를 떠나서 119에 신고한다.

2) 총기·도검류 동봉 우편물은 만지지 말고 원상태로 보존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3) 화생방 물질 이용 우편물은 접촉하지 말고 수건으로 코·입을 막고 우편물 개봉장소를 즉시 떠난다.

화생방물질이 묻으면 옷을 벗고 흐르는 물에 씻되 피부를 긁지 않는다. 오염 확산방지를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한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요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 2. 시설

### 제1조 (목적)

온누리교회의 각 시설에서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과 건물에 설치된 사용설비(보일러, 냉난방, 환기, 취사 등)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로 위기관리가 요구되는 시설과 재난상황에 적용한다.

### 제3조 (안전점검)

- ① 안전관리센터장은 위기방지를 위해 교회시설 및 사용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활동과 사고에 대비한 훈련계획 등 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 ② 안전관리센터장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담당자를 선임하여 점검케 하고 [별지 2]에 따라 기록 관리하도록 지시 감독한다.

가. 수시(주간)점검

- 1) 건물 내·외부 균열상태
- 2) 지하 탱크 저장소에 대하여 그 보관상태 및 주변의 상태 점검
- 3) 위험물 저장 탱크 주변에 발화물질 접근 또는 누유 여부 점검

- 4) 보일러 연소 및 점화상태, 배기 상태 점검
- 5) 전열기 사용 여부 및 전기 코드 문어발식 사용 여부 점검
- 6) 배전판의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를 수시 점검
- 7) 비상 탈출구 차단 및 통로확보 여부
- 8) CCTV 성능상태 점검

나. 월간점검

- 1) 가스안전공사 정기점검 여부, 가스경보기 및 자동차단 감지기 등 작동여부
- 2)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자의 월 1회 정기 점검으로 사전예방
- 3) 연료밸브의 이음새,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배관 상태 등을 확인 점검

다. 분기점검 : 월동 및 해빙기, 장마철의 안전사고 예방점검

라. 반기점검 : 소화기 충전상태, 소화기 위치, 소화전 작동 여부[별지 3]

③ 공통사항

가. 설계도서의 보관 관리 여부

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여부(「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다. 안전관리대책 수립·운영 실태

- 1) 소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 2)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 3) 구역별, 분야별 확인점검 책임자 지정 및 운영 여부

- 4)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조치계획
- 5) 유사시 비상연락체계 및 유관기관 간의 협조체제
- 6) 직원들에 대한 임무별 교육·훈련 실태
- 7) 소화기 등 소방설비 사용 숙지 여부
- 8) 신고요령, 초기진화, 대피방법에 대한 홍보실시
- 9)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안내 및 안전표지 정비·관리 여부
- 10) 비상시 행동요령 안내방송 여부
- 11) 이용객 안전예방 활동상태
- 12) 상황별 비상대응 매뉴얼 수립 및 활용 여부
- 13) 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

라.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여부

-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상 시설의 경우 등급별 점검 주기 준수 여부

마. 정기점검과 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적정 여부

- 1) 점검 관련교육 이수 여부

바. 안전점검 진단 시 전회 결함에 대한 추적조사 및 보수보강 조치 여부

사. 중대결함에 대한 조치 여부

#### ④ 구조물 분야(일반)

가. 주요구조부의 손상, 균열, 누수 등 결함 발생 여부

나. 철골구조물의 구조 내력 저하 여부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형

강 등 관련 부재 변위, 변형, 휨 상태

다. 콘크리트 중성화 및 철골구조물의 부식 여부

- 라. 토목구조물의 안전성 여부
- 마. 시설 누수, 균열, 박리, 배수 상태
- 바. 구조물 보수, 보강상태 및 이력관리 여부 등
- 사. 안전 및 유지관리 부대시설물의 적정 여부(점검통로, 접근시설, 점검구, 조명시설 등)
- 아. 시설 누수, 균열, 박리, 배수상태
- 자. 구조물 보수, 보강상태 및 이력관리 여부
- ⑤ 구조물 분야(특기 사항)
  - 가. 설계 변경 및 동절기 공사 부위 집중 조사
  - 나. 과하중 적재 가능 부위 조사(서고, 창고, 물탱크실, 과성토 부위, 지붕 방수층 과다 여부 등)
  - 다. 주요구조부재(기둥, 보, 내력벽의 내력 상실 여부 등)
  - 라. 진행성 균열 및 진단균열 방치 여부
  - 마. 부등침하의 징후 발생 여부(일정한 방향으로의 경사균열 발생 여부)
  - 바. 안전성 평가 시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해석하였는지 여부
  - 사. 안전성 평가 시 결함 항목별, 부재별, 층별 가중치 반영 여부
  - 아. 기울기 조사 시 조사 시점과 끝점 표기 여부
  - 자. 수평 기울기 판정 시 L 값의 적정 여부( L = 부재 순길이)
  - 차. 증축 관련안전진단 시 기초의 안전성 평가 여부
  - 카. 부속구조물인 옹벽과 비탈면의 전도 여부와 배수구 설치 여부
  - 타. 철골구조물과 바닥이 데크슬래브인 경우 진동 발생 여부

- 파. 철골구조물의 경우 내화피복 상태
- 하. 내진검토 대상시설물의 경우 내진 성능평가 여부와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나 향후 계획 수립 여부
- 가. 재료실험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의 실험 여부
- 나. 외부 벽체 부착물과 지상의 돌출 시설물 안전상태

⑥ 전기분야

- 가. 법정 안전관리자 배치 또는 위탁 점검 실시 여부
- 나.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다. 비상 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 여부
- 라. 전선배선불량 및 전기기구 접지 적정 여부
- 마. 전기실 등 누유, 누전 및 보호시설 적정 여부
- 바. 수전반, 전압계, 전력계의 동작 상태와 과부하, 과전압 등 지시계기 확인
- 사. 전력퓨우즈, 변압기, 계전기류, 수·배전용 차단기류, 전력용 콘덴서 상태 확인
- 아. 고압, 저압 부하설비 관리 상태 등

⑦ 가스, 기계분야

- 가.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 물질 방치 여부
- 나.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다.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 여부
- 라.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설치상태
- 마.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바. 가스 배관 밸브 노후 여부, 배관 매설, 고정상태 등

사. 기계설비 배관이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아.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 배관 부식 여부

자. 지하설비 누수, 환기 상태 및 배출기 작동 여부

차. 기계식주차시설·주차타워 등의 안전관리실태

카.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등

⑧ 식당 일상 점검은 [별지 4] 식당 시설물 일일점검표에 따른다.

⑨ 보안 소방 시설안전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설치 및 관리는 「CCTV 설치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다.

⑩ 시설안전관리자는 점검결과를 보고하여 필요시 안전대책 및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한다.

#### 제4조 (특정시설)

##### ① 유아시설

가. 유아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예배 전에 시설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사고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부모와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다.

##### 나. 유아실 안전

- 1) 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끼이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 2) 바닥은 턱이 없어야 하며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 3)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이 바닥에 놓여 있지 않도록 살펴본다.
- 4) 현관에 불필요한 물건 방치 여부, 신발장이 가로로 넓고 낮게 설

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5) 유리는 안전유리를 설치해야 하고 부딪침 방지를 위해 유리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 6) 환기가 잘 되는가 확인한다.
- 7) 커튼과 카펫은 방염처리 된 것을 사용한다.
- 8) 콘센트에 이물질을 넣지 않도록 안전덮개를 씌우거나 안전형 콘센트를 설치한다.
- 9) 전깃줄은 영유아가 잡아당기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벽 쪽에 붙여 고정한다.
- 10) 커튼이나 블라인드 줄을 짧게 정리한다.
- 11) 책상, 의자 등의 가구나 교구장은 모서리가 둥글고, 모서리 보호대를 설치한다.
- 12) 선풍기에는 안전덮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아동의 손이 닿지 않도록 한다.
- 13) 전열 기구를 바닥에 두고 사용하지 않는다.
- 14) 돌출형 라디에이터, 화기시설 등은 적절한 보호장치를 한다.
- 15) 휴지통에 위험한 물건을 버리지 않는다.
- 16) 정수기 사용 시 온수 나오는 부분에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 17) 유아만 두고 유아실 비우지 않는다.
- 18) 유아실 안전점검 결과는 [별지 1]에 기록 관리한다.

다. 복도와 계단의 안전

- 1) 계단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한다.
- 2) 손잡이는 벽을 따라 설치한다.
- 3) 복도에 설치된 게시판을 안전하게 고정한다.
- 4) 복도와 계단에서 이동할 때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5)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이동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 6) 복도 방향으로 열리는 여닫이문인 경우 통행 시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 라. 화장실의 안전

- 1) 유아가 화장실에 간 경우 계속 주의하여 관찰한다.
- 2) 온수용 수도꼭지 점검: 너무 뜨겁지 않도록 온도 유지한다.
- 3) 바닥 표면이 물에 젖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한다.

### 제5조 (내진 점검)

- ① 관련법에 따라 내진 성능을 확인한다.
- ② 내진 성능 부족 시 보수보강을 한다.
- ③ 무거운 물건은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아래쪽에 내려놓는다.
- ④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은 소방 및 방재안전규정의 제11조 4항에 따른다.

### 제6조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 ① 출입문이 열리면 엘리베이터가 정상으로 도착하였는지 확인 후 승·하차한다.
- ② 문이 닫히는 도중에 승·하차 열림 버튼을 누른다.

- ③ 출입문이 열리면 엘리베이터 문턱의 높이를 확인하고 이용한다.
- ④ 정원초과 벨이 울리면 나중에 탄 사람은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 ⑤ 어린이와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한다.
- ⑥ 출입문에 기대거나 강제 개방을 금지한다.
- ⑦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흔들지 않는다.
- ⑧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비상호출 버튼을 누른다.
- ⑨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고 비상계단을 이용한다.

[별지 1]

## 유아시설 안전 점검표

점검자 :                      년    월    일

	1주	2주	3주	4주
<b>1. 설비(책상, 의자, 교구 정리장, 개인 사물함, 책꽂이, 기타)</b>				
- 표면은 부드러운가?				
- 날카로운 모서리는 없는가?				
- 못이나 부품 등이 빠져 나와 있지 않은가?				
- 흔들거리지 않는가?				
<b>2. 놀잇감(장난감, 교재·교구, 기타)</b>				
- 망가져 위험한 것은 없는가?				
- 날카로운 모서리는 없는가?				
- 부품이 빠진 것은 없는가?				
- 유해한 색소로 된 것은 없는가?				
<b>3. 건물</b>				
- 방바닥에 돌출된 부분은 없는가?				
-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가?				
- 벽이 안전한가?				
- 기타 위험물은 없는가?				
- 천장에 낙하할 물건이 매달려 있지 않은가?				
<b>4. 창</b>				
- 깨진 유리는 없는가?				
<b>5. 전기, 약품</b>				
- 손상된 전선은 없는가?				
- 콘센트의 안전 덮개가 덮여 있는가?				
- 성냥, 화학약품, 세제 등 위험물은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되어 있는가?				
<b>6. 기타</b>				
- 쓰레기통은 깨끗한가?				
- 소화기는 제자리에 있는가?				
- 단추, 동전, 바둑알, 비닐봉투 등이 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은가?				
비고				

[별지 2]

## 일반 시설물(장비) 점검표

점검자 :

점검결과 : ○/×

순위	점검항목	점 검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건물 균열여부												
2	철골의 변형여부												
3	유류저장탱크 상태												
4	탱크위험물 접근상태												
5	보일러 연소 점화 상태												
6	가스밸브 이음새 및 배관상태												
7	가스 정기검사 여부												
8	가스경보 감지기 상태												
9	전기정기안전검사여부												
10	누전차단기 동작상태												
11	전기콘센트 문어발식 코드 사용여부												
12	해빙기안전점검실시여부												
13	장마철안전점검실시여부												
14	소화기 충전 작동상태												
15	소화기 수량 / 위치여부												
16	소화전 작동 이상유무												
17	비상탈출구통로확보여부												
18	건물보험가입여부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별지 4]

## 식당 시설물 일일 점검표

년      월      요일

점검자 :                      점검결과 : ○/×

순위	점검항목	일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가스차단기 닫힘																
2	가스중간밸브 잠김																
3	에어컨 꺼짐																
4	배기 환 스위치 꺼짐																
5	식기 소독기 꺼짐 / 켜짐																
6	자외선살균소독기 (A,B / 켜짐)																
7	전등꺼짐																
8	가스검지기-가스누출 검사																

순위	점검항목	일 자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가스차단기 닫힘																
2	가스중간밸브 잠김																
3	에어컨 꺼짐																
4	배기 환 스위치 꺼짐																
5	식기 소독기 꺼짐 / 켜짐																
6	자외선살균소독기 (A,B/켜짐)																
7	전등꺼짐																
8	가스검지기-가스누출 검사																

### 3. 소방 및 방재

#### 제1조 (목적)

교회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재난 화재 테러 등의 위험으로부터 성도의 인명과 교회의 재산을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온누리교회의 모든 시설물과 성도에 대해 적용한다.

#### 제3조 (지휘감독)

이 규정에 의한 소방방재 업무는 온누리교회 안전관리규정 및 교회 사건 사고 처리 지침에 따른다.

#### 제4조 (소방 및 방재 업무)

① 안전관리센터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소방계획서의 작성
- 나. 자위소방대의 조직
- 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 라. 소방훈련 및 교육
- 마.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 바. 화기 취급의 감독
- 사. 그 밖의 소방안전 관리상 필요한 업무

- ② 안전관리센터장은 소방과 재해 및 재난의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 제5조 (조직 및 임무)

- ① 각 캠퍼스는 자위소방대 조직을 구성 운영한다.
- ② 자위 소방대원은 소방훈련 또는 화재 발생 시에 성도의 피난유도, 초동 소화, 소방대원 지원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제6조 (소방시설의 점검)

- ① 소방시설의 점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등), 동법시행규칙 제18조(자체점검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②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고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는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안전관리센터장은 안전대피 장소를 지정 설치한다.

해당	구분	점검일자	점검방법(점검자)
<input type="checkbox"/>	작동기능점검	(    월    일)	
<input type="checkbox"/>	종합정밀점검	(    월    일)	

### 제7조 (소방시설의 정비 보완)

- ① 관할소방서 및 점검대행자의 점검결과 지적된고장 또는 기준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보완 조치한다.

② 자체점검결과 고장 또는 성능 미달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보고 및 정비 보완하고 소방시설 정비보완 기록부에 기록·유지한다.

### 제8조 (소방안전 순찰)

- ① 소방안전 순찰은 각 캠퍼스별 순찰의 필요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② 소방안전순찰 요령은 자체계획에 의해 수립하고 순찰일지를 기록·유지한다.

### 제9조 (방재훈련 및 교육)

- ① 소방방재훈련 및 교육은 관련법과 교회 안전 관리규정과 관리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 ② 소방방재훈련 및 교육계획은 아래 표와 같이 실시하며,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구 분	내 용
※ 비상사태 대처훈련 1. 화재 대처훈련 2. 수방 대처훈련 3. 누수사고 대처훈련 4. 정전사고 대처훈련 5. 승강기 인명 구출훈련 6. 가스누출 조치훈련 7. 지진대처훈련 8. 테러발생시 대처훈련	각 연 1회 이상
※ 안전 교육훈련(소방훈련)	시설이용 안내 및 비상대처 요령 교육, 비상시 행동요령 및 대피안내도 배포

## 제10조 (소방훈련)

- ① 소방 및 방재훈련은 제9조(방재훈련 및 교육)과 병행 또는 별도로 실시한다.
- ② 연간 소방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소방서와 합동훈련 요청 시 추가 실시한다.
- ③ 훈련 후 강평을 하고 훈련결과는 [별지 1]의 소방훈련 교육실시 결과 기록부를 2년간 보관한다.
- ④ 소방훈련을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훈련종류	내 용
기초훈련	소화기, 옥내소화전,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 등의 사용 (취급)요령을 익히는 훈련
부분훈련	통보, 연락, 소화, 피난유도, 응급구조, 소방대유도 등을 개별적으로 익히는 훈련
종합훈련	부분훈련을 각 임무별로 동시에 종합해서 행하는 훈련 (실제 화재에 즉각 대처하기 위한 조직적인 훈련)
시청각교육	시청각 자료 활용, 홍보영상

## 제11조 (비상시 행동요령)

- ①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 가. 화재 초동대처
    - 1) 화재가 발생하면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른다.
    - 2) 119에 신고한다.

- 3) 소화기 및 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한다.
- 4)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대피한다.
- 5)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싼다.
- 6)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나. 화재 발생 시 부서별 조치 사항

부 서	조 치 사 항
화재현장	"불이야" 큰소리로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 전파. 주변 도움 받아 소화기·소화전을 사용 1차 화재진압
관계실	CCTV 확인 후 화재 발생 사실을 예배리더십과 방송실에 알리고 119에 화재 발생 신고
방 송 실	교회 전체로 대피 안내 방송할 수 있도록 조치
예배리더십 및 진행자	성도들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대피하도록 요청
예배지원팀	무전기를 비상용 공통채널로 돌린 후 주요 대피 출입구로 가서 대피 안내. 인명구조 지원
주차봉사팀	무전기를 비상용 공통채널로 돌린 후 건물 외부 안전지역으로 대피 안내 및 소방차 진입로 확인
안내위원	현재 위치에서 성도들을 질서 있게 대피 유도 및 안내
목회지원실 간사	가장 혼잡 지역인 로비 및 광장에서 대피 안내
로비 안내봉사자	소방차, 구급차, 응급구조팀 진입로 확보 및 인명구조 지원
전기실, 기관실	비상발전 및 스프링클러 작동을 위한 준비

#### 다. 소화기 사용요령

- 1)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 2)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 쪽으로 향하게 한다.
- 3)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린다.

#### ② 피난 및 대피계획

##### 가. 피난유도 우선순위

- 1) 1순위 : 상황 발생 층 및 직상층 인원 대피 유도, 장애인 노약자 우선
- 2) 2순위 : 상황 발생 층의 상층부 인원 대피 유도, 장애인 노약자 우선
- 3) 3순위 : 상황 발생 층의 하층부 인원 대피 유도, 장애인 노약자 우선

나. 각 캠퍼스는 피난·대피계획을 수립한다.

#### ③ 피난 및 대피 요령

가. 나 혼자만의 안전을 위해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 나가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대피함으로 인한 압사 사고 등으로 오히려 탈출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해 질 수도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교회 리더십의 안내대로 차례대로 줄지어 대피 동선을 따라 신속히 대피한다.

나. 다급하다 하여 창문으로 무작정 뛰어내리지 말고 이동 시에는 벽돌·유리 등 파괴된 건축물 파편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에 유의한다.

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지정된 대피로를 이용한다.

라. 가급적 지상으로 대피하여야 하지만 내려가는 계단이 막혔을 때는 옥상으로 탈출하여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다.

- 마. 지상에 도착하더라도 건물붕괴의 후폭풍 등을 고려 견고한 외벽을 따라 대피하되 건물 높이 2배 이상의 거리로 탈출한다.
- 바. 문밖에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문을 갑자기 열어서는 안 된다. (문밖의 불길이 산소를 찾아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으므로 몸을 문 뒤로 숨기고 천천히 열어야 함)
- 사. 특히, 문의 손잡이가 뜨거울 때는 복도의 불길이 세다는 증거이므로 출입문을 열면 안 된다. (이럴 때는 문틈을 막고 문 주변에 물을 뿌린 다음 창문을 열고 구조를 기다려야 함)
- 아. 복도를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해도 함부로 뛰어서는 안 된다. (유독가스가 차 있을 수도 있음)
- 자. 가스는 천장부터 차기 때문에 바닥에서 20cm정도까지는 공기가 남아 있으므로 납작 엎드려서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기어서 대피한다.
- 차. 옷에 불이 붙으면 이리저리 도망 다니지 말고 이불 담요 등으로 감싸거나 바닥에 누워 뒹굴면서 손으로 두들겨 끈다.
- 카. 비상계단을 내려갈 땐 불이 난 곳의 반대 방향인지 확인한다.
- 타. 화장실이나 막다른 곳으로 가셔도 안 된다. (간히면 빠져 나오기 힘들)
- 파. 아래층에 불이나 1층으로 빠져나갈 수 없으면 옥상이나 창가 등 숨을 쉴 수 있는 곳으로 대피해 구조 대기한다.
- 하. 높은 곳에 고립되면 뛰어내리지 말고 각종 수단을 동원해 자기가 있는 곳을 알린다.

가. 차량을 이용하여 대피하려고 지하주차장으로 가지 말고 바로 지상으로 대피한다.

나. 현금이나 기타 귀중품에 연연하지 말고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다. 유도 요원의 유도에 따라 대피하여야 하며, 구조 요원이 도착하였을 경우 사상자 위치를 안내하고, 구조 요원의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 개인행동은 자제하고 항상 2인 이상 안전지역으로 이동하고 만약 노약자 어린이 등이 있으면 함께 대피한다.

#### ④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가. 공공장소에서는 침착하게 안내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는 바로 내린다.

다. 자동차를 타고 있을 때는 도로 오른쪽에 자동차를 세우고 대피한다.

라. 휴대용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을 통해 올바른 정보 파악한다.

마. 전열기나 가스레인을 끈다.

바. 소지품(가방, 방석, 모자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사. 집 밖에 있을 때는 가까이에 있는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아. 낙하물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몸을 피한다.

자. 출구나 계단으로 몰려가지 않는다.

차. 가지고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카. 안내자의 지시를 잘 따르고, 지정된 장소에 침착하게 대피한다.

타. 집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는다.

파. 불을 끄고 가스 밸브를 잠근다.

하. 책상이나 침대 밑으로 대피한다.

가. 떨어질 물건을 피하고,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 ⑤ 지진 발생 후 해야 할 일

가. 서로 다친 곳은 없는지 살펴본다.

나.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또한, 휴대용 라디오 등으로 지진 대피 방송을 들으면서 상황을 살핀다.

#### ⑥ 테러 시 행동요령

##### [폭발물이 발견된 현장 시]

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면서 폭탄이 발견된 지점의 반대 방향 계단으로 즉시 대피한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하며 계단의 한쪽만을 이용(좌측통행)하여 폭발물 처리팀이나 소방관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나. 휴대전화·라디오·무전기 등은 기폭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 밖으로 빠져나온 후에는 안전거리(붕괴: 건물 높이 이상, 폭발: 500m이상) 밖으로 대피한다.

라. 대피경로에도 제2의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대피해야 한다.

마. 대피 도중 폭발물이 터지면 비산·낙하물을 피하는 데 유의한다.

[총격 테러 시]

가. 총기 난사 때 일단 엎드린 후 동정을 살핀다.

나. 항상 낮은 자세(포복 자세)를 유지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즉시 119에 신고한다.

[억류, 납치 시]

가. 납치 감금 시, 일단 순응하고 탈출 가능성이 크지 않으면 탈출하지 않는다.

나. 답변은 되도록 짧게 자연스러운 자세로 대답하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외부에서 구출을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으므로 절망감을 느끼지 말고 탈출로 등 자신이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한다.

라. 눈을 가리면 주변의 소리·냄새·피랍로 경사와 거리·범인 음성 등을 기억한다.

마. 구출작전이 전개될 때는 즉시 엎드려야 한다.

[생물 테러 의심 물건 발견 시]

가. 물건(물체)는 건드리지 말고 즉시 자리를 피한 후 119에 신고한다.

나. 실내에서 열었을 경우에는 창문과 문을 모두 닫고 주변 사람들을 대피시키며 에어컨·환기시설 등을 모두 꺼야 한다.

다. 의심 물질이 날릴 염려가 있을 경우 옷, 신문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덮어 두어야 한다.

라. 방독면을 찾아 쓰거나 손수건 또는 휴지 여러장 이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고 현장을 즉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마. 목욕을 실시하고 입었던 옷, 신발 등은 소독 후 폐기한다.

바. 생물테러 작용제는 치료제가 있으므로 오염된 후에도 침착하게 행동한다.

#### [화학 테러 발생 시]

가. 화학물질에 노출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한다.

나. 손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옷으로 피부를 감싸 노출을 방지한다.

다. 실외에서는 바람을 안고 이동하되 높은 곳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라. 오염된 장소가 지하철, 건물 등 실내공간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한다.

마. 차량으로 사건현장을 이동 시에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히터는 켜지 않는다.

#### [방사능 테러 발생 시]

가. 라디오, TV 등을 통해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나. 건물내 방사능 유출경고가 있으면 방사능이 오염되지 않은 건물로 대피한다.

다. 건물이 오염되지 않았다면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

라. 건물이나 대피소에 있는 경우에는 창문을 잠그고 에어컨·히터·환풍기를 끈다.

마. 대피시에 음식물 지참이나 애완동물 동반은 절대로 금지한다.

바. 방사능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오염된 옷을 벗고 온몸을 깨끗이 씻는다.

[우편물 테러 대처 시]

가. 의심 우편물을 최초 발견한 경우

- 1) 즉시 119에 신고한다.
- 2) 냄새를 맡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않으며 조심스럽게 우편물을 내려 놓는다.
- 3) 흔드는 등 충격을 주지 말고 라이터와 같은 물질을 가까이하지 않는다.
- 4) 얇은 줄이나 선은 당기거나 자르지 말고 휴대전화 등 전자파 발생 방지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

나. 우편물 개봉 후

- 1) 사제폭탄 이용 우편물 개봉 시에는 즉시 그 장소를 떠나서 119에 신고한다.
- 2) 총기·도검류 동봉 우편물 만지지 말고 원상태로 보존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 3) 화생방 물질 이용 우편물은 접촉하지 말고 수건으로 코·입을 막고 우편물 개봉장소를 즉시 떠난다.
- 4) 화생방 물질이 묻으면 옷을 벗고 흐르는 물에 씻되 피부를 긁지 않는다.
- 5) 오염 확산방지를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한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요령을 설명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요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 제12조 [소방현황 및 기록 유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 점검 유지한다.

- ① 건축물 기본현황 및 소방시설 배치도
- ② 소방시설 현황
- ③ 피난·방화시설 현황 및 피난 계획도
- ④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의 현황
- ⑤ 화기 책임자 지정현황
- ⑥ 소방시설 정비 보완 기록부
- ⑦ 소방대책위원회 회의록
- ⑧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순찰
- ⑨ 소방 훈련 교육 실시결과 기록부

## 제13조 [소방시설 현황도 비치]

① 각 캠퍼스는 소방시설현황도를 작성 비치한다.

가. 소화기, 소화전 위치도

나. AED(자동 심장충격기), 접이식 운반대 위치도

다. 피난 대피계획 및 도면

[별지 1]

<b>소방훈련 · 교육일시 결과기록부</b>				
작성년월일 : . . .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소방안전관리 등 급	<input type="checkbox"/> 특급 <input type="checkbox"/> 1급 <input type="checkbox"/> 2급
	소 재 지			
	구 조			
관 계 인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소방안전 관리자	성 명		선임일자	
	직 위		자격구분	
훈련·교육일지				
훈련·교육 구분			교육구분	<input type="checkbox"/> 자체 교육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교육
훈 련 통제관	(서명 또는 인)		교 관	(서명 또는 인)
교 육 교 관	(서명 또는 인)			
훈련·교육 실시사항 ※ 자위소방대 행동요령 - 화재예방요령, 화재시 대처요령, 소방시설사용 훈련, 피난유도 계획				
※ 작성요령 -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합니다. - 훈련·교육실시사항 : 훈련·교육의 일시, 장소, 대상인원 및 내용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 4. 교통

### 제1조 (목적)

교회 주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성도들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과 이웃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주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제2조 (적용범위)

- ① 교회를 진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
- ② 교회 차량 운행관리 및 교통 주차 안전관리시설

### 제3조 (차량 진출입)

- ① 차량 진입 시에는 교통 흐름에 원활한 방향으로 순서대로 진행하며 봉사자의 안내에 적극 협조한다.
- ② 차량 진출 시에는 예배 직후 일시에 차량이 출차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병목현상 구간이 없도록 관리한다.
- ③ 차량 진출입 시 차량이 혼재되어 구분이 필요한 경우 입차 차량을 비상등 점멸등의 방법으로 구분 안내한다.
- ④ 비상시에는 통제 요원의 지시에 따른다.

### 제4조 (주차관리)

- 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차량은 예배 후 즉시 출차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예배 참석 성도들이 원활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차량 등 교통약자의 차량을 배려한다.
- ③ 교회 내외 불법주차 금지를 통해 교통 혼잡 발생을 방지한다.
- ④ 교회 내 공간 및 동선 개선과 표시선, 안전봉 설치 등을 통해 불법주차 가능 공간을 제거한다.
- ⑤ 부적절한 주차장 사용을 통제할 방안을 간구한다.

### 제5조 (승하차 관리)

- ① 버스정류장 부근의 일반 차량 주정차 금지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② 택시 및 성도 차량의 승하차를 위해 교통 흐름에 불편함이 없는 특정 지역을 승하차 지역으로 운영하여 교통 혼잡을 방지한다.
- ③ 셔틀버스의 안전한 승하차 및 편의를 위하여 승하차 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 제6조 (긴급차량)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교회 내 진출·입과 주정차를 위한 동선 및 공간을 상시 확보하며 구분 표시를 하여 누구나 인식할 수 있게 한다.

### 제7조 (비상시)

- ① 예배와 집회 중 비상상황으로 인해 교회 밖으로 일시에 대피하는 성도들을 사전에 계획된 안전한 장소로 소개하고 긴급 차량의 신속한 진입을 위한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훈련 시나리오를 준비하여

관련자들은 충분히 숙지한다.

② 안전조치를 위해 이동이 필요한 차량 이외의 모든 차량은 비상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을 제한한다.

③ 교회 내 비상 상황에 대한 예배 안내팀에서 주차 사역팀으로의 신속한 전달 체계 및 비상 무전 채널 공유 등에 대한 시나리오도 준비하여 공유한다.

## 제8조 (교통시설 안전점검)

① 교회 내 보행자의 보도와 차량의 차도가 구분되어야 하며 필요시 구획선 표시 및 안전봉 등을 설치한다.

② 매주 주일 기준으로 차량과 보행자 동선상 안전 위험 요소 등을 점검하고 결함 제거 및 개선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③ 교회 내 기계식 주차시설은 반드시 관련 법규에 따른 운용 및 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④ 동절기 교회 내외부 인도와 도로 결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준비 시행한다.

⑤ 교회 주변의 제설은 교회 상주 직원, 관련 봉사자 교회 주변 성도들이 하도록 한다.

## 제9조 (교회 차량 운행 및 전세버스 이용)

① 교회 차량 운행 시 운전자는 해당 차량 운전 가능 운전면허증 소지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연령의 적용대상이어야 한다. 차량 관리자는 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며 차량운행일지 등을 비치 관리한다.

② 차량 이용 시 모든 탑승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며 특히 버스 이용 시 행사 안전 책임자가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한다.

③ 교회 차량은 수시 정기검사 등을 통해 안전운행을 위한 상태를 유지하며 정비 이력 등 차량정비 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 제10조 (봉사자 자세 및 안전)

① 봉사자 복장은 단정하게 안내시에는 친절하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하며 차량을 손이나 교통신호봉으로 두드리며 안내하지 않는다.

② 봉사 중 다툼이나 문제 발생 시 먼저 듣는 자세로 임하며 서로 간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리더십이나 사역자를 통해 해결한다.

③ 차량 유도 시 차량 측면에서 안내하며 본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④ 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안전 조끼를 착용한다.

⑤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광봉을 사용하며 특히 새벽 및 야간 안내 시 경광봉은 반드시 점멸되어야 한다.

⑥ 교통봉사를 위해 숙지해야 할 사항과 봉사자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교통봉사에 익숙하지 않은 공동체 봉사자를 위한 안내서 등을 비치한다.

⑦ 교회 주차 봉사구역 내에서 발생한 봉사자 관련 사고 시 사건사고처리 지침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제11조 (운전자)

- ①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운전자는 교통 관련 봉사자들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비상시 연락을 위한 전화번호가 보이게 차량에 비치한다.
- ② 교통 관련 봉사자들은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므로 서로 존중하고 수고에 감사해야 할 대상임을 인식한다.
- ③ 교회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캠페인에 적극 협조한다.
- ④ 교회 내 장기주차는 금지한다.

## 제12조 (홍보)

- ① 교통 및 주차 관련 문제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위해 공동체를 통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한다.
- ② 새가족을 위한 교회 주변 교통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안내서를 준비하여 배포한다.

## 5. 보건

### 제1조 (목적)

예배와 집회 등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조치 식당 위생 관리 등의 보건 안전 관리와 유아시설 안전관리 기준 설정 및 지침을 통하여 성도의 건강을 온전하게 잘 지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림에 있다.

### 제2조 (적용범위)

- ① 대상시설 현황관리
- ② 식당 위생관리, 방역, 수질관리
- ③ 응급환자 조치, 사고환자 조치
- ④ 공기질 관리, 실내 온습도 관리

### 제3조 (식당 위생관리)

- ①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을 위해 건강상태, 복장, 손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조리 종사자에게 감염성 질환(설사, 고열, 구토, 피부발진, 습진, 인후염, 결핵, 눈, 귀, 코에 진물), 알레르기 질환, 피부감염(화농, 화농성 질환 또는 상처)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작업 배제, 치료 등 조치한다.
- ③ 식당의 위생 안전점검은 [별지 1]에 따른다.
- ④ 식품의 취급

가. 식재료 검수

- 1) 식품 온도 : 냉장식품 및 조리 식품은 5℃ 이하, 냉동식품은 냉동상태 유지
- 2) 포장상태: 박스, 냉장·냉동, 진공포장 상태, 녹은 흔적 등을 검토
- 3) 품질상태: 각 식품별 검수 기준에 의하여 신선도, 이취 확인

나. 채소, 과일의 세척 및 소독

- 1) 채소는 박피, 잎 분리 등의 전처리 후 소독
- 2) 소독제 사용법: 유효염소농도(100ppm)에서 5분간 담근 후 먹는 물로 씻음
- 3) 행굼물 청정도: 먹는 물을 사용하되 육안검사로 확인

⑤ 시설 설비 위생

- 가. 급식실, 조리실, 식품창고의 청결, 정리, 소독 상태를 점검
- 나. 냉장고의 정상 작동, 청결, 정리 정돈 상태 점검: 냉장실 5℃ 이하, 냉동실 -18℃ 이하로 유지
- 다. 조리기구, 기계의 사용 전·후 세척, 소독, 용도에 따른 구분 사용 등의 점검
- 라. 고장 또는 수리를 요하는 시설·설비가 있는지 점검
- 마. 해충류와 쓰레기 처리상태 점검

## 제4조 (응급환자 조치)

- ① 예배 시 또는 교회를 방문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갑자기 발병했을 경우 의료기관에 가기 전에 임시로 즉시 치료하여 생명을 구하고 빠른

회복을 돕고 장애를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응급환자 조치 매뉴얼을 숙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응급환자 조치 요령 및 역할 분담

가. 응급환자 발생하면 예배위원이나 안내데스크에 알리고 예배팀장과 간사에게 연락한다.

나. 예배위원과 예배팀장은 담당 의사에게 연락하여 즉시 환자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담당 의사는 상황 발생 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석에서 대기한다.

라. 진료 후 후송이 결정되면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 보고한다.

③ 기타

가. 상황 발생 시 진료에 필요한 약품과 기구, 응급 구급상자를 준비하며 환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나. 상황별 응급처치에 대한 내용은 [별지 3] 참조한다.

다. 구급상자에 갖추어야 할 내용(예시)

1) 의료용 재료 : 붕대, 거즈, 소독솜, 삼각붕대, 탄력붕대, 칼, 가위, 핀셋, 면봉,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반창고, 부목류

2) 외용제 : 과산화수소수, 베타딘, 항생제 외용연고, 화상용 바세린, 거즈, 생리식염수,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연고, 스프레이 파스

3) 기본 의약품: 소화제, 정장제, 감기약, 진통제

라. 캠퍼스별로 담당의사 및 의료봉사자, 예배팀, 간사와의 회의와 실제 연습을 통해 응급환자 대처 매뉴얼을 숙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마. 심정지가 된 환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위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별지 3] 심폐 소생술 요령을 참조하여 교육을 한다.

바. 자동 심장충격기가 있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과 반복 병행 실시하며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은 [별지 4]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요령을 참조하여 교육을 한다.

사. 교회는 자동 심장충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 제5조 (먹는물 관리)

### ① 냉온수기 또는 정수기 설치금지 장소

가.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나.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다. 냉난방기 앞

### ② 냉온수기, 정수기 관리방법

가. 필터는 규정된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나. 청소 냉온수기, 정수기는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다.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 소독을한다. 다만,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온수기, 정수기에 잔류

하지 않도록 한다.

라. [별지 2]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마.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한다.

## 제6조 (실내공기질 관리)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② 실내공기질 측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측정하도록 한다.

③ 교회는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에어컨 세척유지관리

가. 실내기 연 1회 표준세척(필터, 판넬, 그릴, 팬, 드레인판)

나. 실내기 연 4-5회 필터세척(필터, 판넬, 그릴)

다. 실외기 연 1회 세척

라. 완전분해세척은 필요시 시행한다.

마. 에어컨은 1-2년에 한 번 정도 화학적 살균, 소독해 주는 것이 좋다.

## 제7조 (식중독 예방)

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가. 손을 깨끗이 씻는다.

나. 익히지 않은 생선, 조개 섭취를 주의한다.

다. 식재료에 따라 칼과 도마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라. 음식을 실온에 보관하지 않는다.

②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복통, 설사 환자 발생 시 신속히 의무실로 이송한다.

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병원으로 이송 후속 조치한다.

다. 동일원인 동일증세를 보이는 식중독 의심환자(복통, 설사 등) 2명 이상 발생 시는 인지 즉시 보건소에 신고한다.

라. 집단 식중독이 의심되면 ‘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후속 조치와 행정지원 한다.

마. 식중독 원인으로 의심되는 음식 등을 모두 수거하여 보관한다.

바. 원인 규명을 위한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협조한다.

사. 참가한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 제8조 [전염성 호흡기 질환 예방]

① 손 씻기, 기침 시 예절 준수 등 일반적인 감염병의 예방 수칙을 준수한다.

②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고 본인이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③ 노약자(65세 이상,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중동지역 여행을 자제한다.

④ 발열 및 호흡곤란 등 호흡기 이상 증세가 있으면 속히 의료기관을 방문 하도록 한다.

⑤ 교회는 손 세정제를 비치한다.

[별지 1]

## 식당 위생안전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구분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사항
개인 위생	조리원(   명)의 건강상태는 어떠한가?(감염성질환 여부)*	이상없음, 이상발견 후 조치	
	복장(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앞치마) 위생상태는 어떠한가?	청결, 미흡, 불량	
	손 위생상태(손상처, 손톱상태, 장신구착용여부)는 어떠한가?	이상없음, 이상발견 후 조치	
식품의 취급	식재료는 바닥에서 60cm 이상에서 취급하였는가?	실시, 미실시	
	가열 조리하는 식품은 내부온도(74℃ 이상)를 측정하였는가?	실시, 미실시, 해당없음	
	생으로 먹는 과일 및 채소류는 소독을 실시하였는가?	실시, 미실시, 해당없음	
	검식시 음식에서 이상한 냄새, 맛은 없었는가?	이상없음, 이상 발견후 조치	
	보존식은 -18℃ 이하에 보관·관리하였는가?	실시, 미실시 (보존식, 우유)	
	변질, 부패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은 없는가?	이상없음, 이상 발견후 조치	
시설, 설비 위생	급식실 내·외부 청소 및 소독상태는 어떠한가?	청결, 미흡, 불량(내부,외부)	
	조리실의 정리정돈 상태는 어떠한가?	청결, 미흡, 불량	
	식품창고의 청결과 정리정돈 상태는 어떠한가?	청결, 미흡, 불량	
	고장 또는 수리를 요하는 시설·설비가 있는가?	이상없음, 고장(    )	
	냉장고는 정상 작동되는가? 청결 및 정리정돈상태는 어떠한가?	작동상태(    ) 청결, 미흡, 불량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였나? (채소, 생선, 육류로 구분-칼, 도마, 식기류 등)	구분 사용, 미사용(    )	
	조리기구·기계는 사용 전·후 세척, 소독을 실시하였나?	실시, 미실시	
	행주, 도마, 칼은 소독하고 사용하였는가?	실시, 미실시(    )	
	취, 파괴 등 해충류가 있는가?	종류:	
	쓰레기의 처리 상태는 어떠한가? (잔반량:    kg)	청결, 미흡, 불량 수거상태(    )	
안전 관리	가스, 수도꼭지 잠금을 확인하였나?	확인, 미확인	
	문단속, 전열기, 코드를 뽑았나?	확인, 미확인	
	급식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관리되는가?	관리, 미관리(    )	
기타			

[별지 2]

## 냉온수기 정수기 관리카드

점검일: 20   년   월   일   요일

점검일시 (년월일)	설치장소 적정성 (O, X)	필터 교환시기	청소, 소독시기 (증기소독, 약품소독 등)	점검자 (성명, 서명)

<참고사항>

1.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 금지장소
  - 가.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 나.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 다. 냉·난방기 앞
2. 냉온수기, 정수기 관리방법
  - 가. 냉온수기 에어필터는 1년마다 1회 이상 교환한다.  
정수기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 나. 6개월마다 1회 이상 고온·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소독·청소한다.
  - 다. 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약품이 냉온수기,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한다.
  - 라. 총대장균군, 탁도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한다.
3. [별지 2] 관리카드를 냉온수기, 정수기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별지 3]

## 심폐소생술

###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기본 심폐소생술에서 중요한 과정은 심정지 발생의 빠른 인지와 가슴 압박, 인공 호흡 그리고 빠른 제세동(심장충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의 목표는 심장처치에 의한 순환회복으로 뇌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 순서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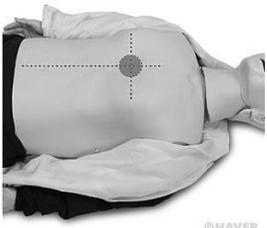
의식확인 및 119 신고 ▶ 가슴 압박 (30회) ▶ 인공 호흡 (2회)

#### 1. 의식확인 및 119 신고

 <p>1. 환자를 바로 눕힌 후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다.</p>	 <p>2. 주변 사람들에게 119 호출 및 자동 심장충격기를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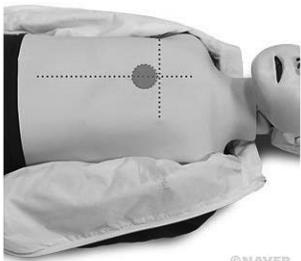
#### 2. 가슴 압박 (30회)

##### (1)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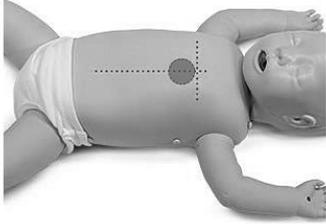
 <p>1. 가슴의 중앙인 흉골의 아래쪽 절반부위에 손바닥을 위치시킨다.</p>	 <p>2.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의 아래 부위만을 환자의 흉골부위에 접촉시킨다.</p>
---	---

 <p>3. 시술자의 어깨는 환자의 흉골이 맞는 부위와 수직이 되게 위치한다.</p>	 <p>4. 양쪽 어깨 힘을 이용하여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5cm 이상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눌러준다.</p>
--	---

(2)소아

 <p>1. 압박할 위치는 양쪽 젖꼭지 부위를 잇는 선의 정중앙의 바로 아래 부분이다.</p>	 <p>2. 한 손으로 손바닥의 아래 부위만을 환자의 흉골부위에 접촉시킨다.</p>
 <p>3. 시술자의 어깨는 환자의 흉골이 맞는 부위와 수직이 되게 위치한다.</p>	 <p>4. 한 손으로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와 4-5cm 이상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눌러준다.</p>

### (3)영아

 <p>1. 압박할 위치는 양쪽 젖꼭지 부위를 잇는 선 정중앙의 바로 아래 부분이다.</p>	 <p>2. 검지와 중지 또는 중지와 약지 손가락을 모은 후 첫마디 부위를 환자의 흉골 부위에 접촉시킨다.</p>
 <p>3. 시술자의 손가락은 환자의 흉골이 맞닿는 부위와 수직이 되게 위치한다.</p>	 <p>4. 1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와 4cm 정도의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눌러준다.</p>

### 3. 인공 호흡 (2회) :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모르거나 능숙하지 않으면 인공호흡 제외하고, 지속적인 가슴압박만 시행(가급적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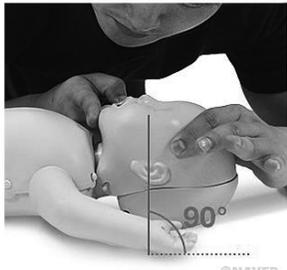
#### (1)성인

 <p>1.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개방시킨다.</p>	 <p>2. 머리를 젖힌 손의 검지와 엄지로 코를 막은 뒤 환자의 입에 숨을 2회 불어 넣는다.</p>	 <p>3. 숨을 불어넣을 때 결눈질로 환자의 가슴이 상승하는지 관찰하도록 한다.</p>
--	--	--

## (2) 소아

 <p>1. 한 손으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개방시킨다.</p>	 <p>2. 머리를 젖힌 손의 검지와 엄지로 코를 막은 뒤 환자의 입에 숨을 2회 불어 넣는다.</p>	 <p>3. 숨을 불어넣을 때 결눈질로 환자의 가슴이 상승하는지 관찰하도록 한다.</p>
--	--	---

## (3) 영아

 <p>1. 한 손으로 귀와 바닥이 평행할 정도로 턱을 들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머리를 뒤로 젖힌다.</p>	 <p>2. 환자의 입과 코에 동시에 숨을 2회 불어 넣는다.</p>	 <p>3. 숨을 불어넣을 때 결눈질로 환자의 가슴이 상승하는지 관찰하도록 한다.</p>
---	--	--

## 4. 무한 반복

119 도착이나 자동 심장충격기 도착 및 패드 부착 시까지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2 비율로 반복한다. (인공호흡 시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어 가급적 지양)

구조자가 두 사람인 경우에는 30:2로 1인은 가슴 압박을 하고 다른 1인은 인공호흡을 한다.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는 동안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거나 움직임이 명확할 때 심폐소생술을 중단할 수 있다.

## ※ 주의사항

- ① 심정지 환자의 경우 간혹 숨을 쉬는 듯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나 이는 비정상적인 호흡이며 얇게, 빠르게, 가슴 운동이 명확하지 않은 호흡 패턴 양상을 보고 환자가 숨을 쉰다고 선불리 판단하여 심폐소생술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 ② 가슴을 압박할 때 팔꿈치에 힘을 주고 절대 구부리지 않는다.
- ③ 구조자가 흥분하여 가슴 압박을 매우 빠른 속도(분당 150회 이상)로 시행하지 않는다.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 ④ 가슴 압박 후 인공호흡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환자의 맥박이 만져지는지 확인하지 말고 즉시 인공호흡을 한다.
- ⑤ 인공호흡은 반드시 턱을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힌 후 기도 개방 유지상태에서 시행한다.
- ⑥ 인공호흡 시 환자의 가슴 상승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2회만 시행한다. 가슴 압박이 가장 중요하므로 인공호흡을 잘하려고 가슴 압박을 연기시켜서는 안 된다.

## [별지 4]

# AED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요령

자동 심장충격기는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도구로, 의학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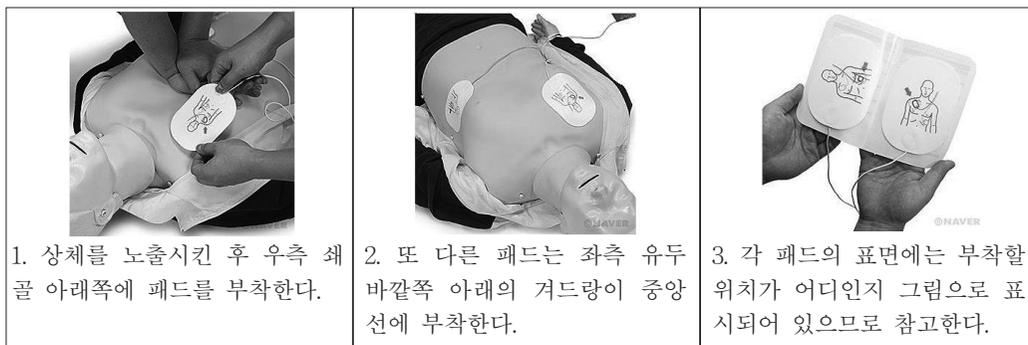
### 순서와 방법

전원 켜기 → 패드 부착 → 심장 리듬 분석 → 전기 충격

#### 1. 전원 켜기



#### 2. 패드 부착



### 3. 심장리듬 분석

 <p>1. 패드에 연결된 선을 기계에 꽂는다.</p>	 <p>2. 기계에서 자동으로 심장리듬 분석 중이라는 말이 나온다.</p>	 <p>3. 심장 분석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환자에게 닿지 않도록 떨어진다.</p>
---	--	---

### 4. 전기 충격

 <p>1. 제세동(심장충격)이 필요하다면 기계가 자동으로 충전을 하며, 충전 후 제세동 버튼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p>	 <p>2. 제세동(심장충격)이 필요하다면 기계가 자동으로 충전을 하며, 충전 후 제세동 버튼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나온다.</p>	 <p>3. 제세동(심장충격)버튼을 누르면 환자에게 제세동을 위한 전기충격이 가해지게 된다.</p>
--	--	---

### 5. 무한 반복

전기충격이 필요없거나, 전기 충격이 주어지고 나서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기계는 2분마다 심장리듬을 분석한다. 심폐소생술 도중에 기계에서 음성 지시가 나오면 기계의 지시에 따라서 위의 절차를 반복하도록 한다.

## ※ 주의사항

- ① 움직이는 자동차 안과 같이 흔들림이 많은 장소에서 자동 심장충격기를 작동할 경우에는 기계가 흔들림을 제세동(심장충격)이 필요한 리듬으로 판단하여 잘못된 제세동(심장충격) 충격을 시행할 수 있다. 자동차 안에서 기계를 작동할 때에는 차를 정지시킨 이후에 작동한다.
- ② 제세동(심장충격) 시행 시 감전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행자와 환자 간의 접촉이 없음을 확인한다.
- ③ 기계의 표면에는 작동 방법에 대하여 그림과 글로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내용을 참조하여 기계를 작동한다.

## 6. 정보

### 제1조 (목적)

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관된 문서 데이터 및 전자화된 모든 데이터를 망라하여 텍스트 정보, 이미지 정보, 영상 등을 수집, 가공, 열람 등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제반 규정 및 실행 방안을 강구하여 안전한 교회 정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제2조 (적용범위)

① 일반적인 정보 수집 및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

가. 각종 문서 정보

나. 정보 안전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

다. 교회 내 조직 단위별 정보 사용에 대한 지침

라. 사이버 공간 이용에 대한 권고

②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가.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사항

나. 개인정보 수집, 저장, 사용, 제공, 파기 절차

③ IT 정보 시스템 안전 관리 사항

가. 제반 시설(전산실, 전원공급장치 시설, 통신실)에 대한 사항

나. 컴퓨터 장비 및 부속 장비(통신장비, TV, PC, 프린터, 모바일 장비 등)

다. 개인 단말 장치 및 이동장치(USB 등)

라. 각종 시스템 및 지원 소프트웨어 일체

마. 응용프로그램 일체

바. 데이터 및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 일체의 보안

사.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으로부터 방어

아. 비상시 복구 대책

④ 상기 각 항의 안전 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직의 구성, 교육 및 훈련, 점검에 관한 사항

### 제3조 (정보 수집 및 관리 프로세스)

① 정보의 수집 대상과 목적과 저장 및 파기에 관한 원칙을 마련한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분류하고 정보별 관리 기간 및 방안 등을 정한다.

가. 새신자 등록서

나. 각종 교육 등록 신청서

다. 공동체 수첩 및 기도 제목관련 문건 등

② 문서관리

가. 문서의 종류 및 관리 범위에 대한 규정

나. 기밀정보 분류 및 보호조치

다. 지적재산물(콘텐츠 등)에 대한 보호

라. 사역 및 행정정보에 대한 보호

1) 새가족 등록카드 작성 보관 파기 등에 관한 절차 작성

2) 각종 교육 등록 신청서

3) 각 공동체 내에서 개별 관리되는 문서 및 파일(예, 공동체 수첩, 주소록, 기도 제목 등)에 관한 보안 인식 제고 및 관리 절차 마련.

마. 정보문서의 작성 및 보관 파기에 대한 문서 관리 절차 수립

1) 입력한 입력문서에 대한 보관 및 파기 처리

2) 출력 문서에 대한 기밀 등급 및 출력 인식정보(워터마크) 출력 표시

3) 사용 후 문서 파기 방안

바. 문서 파쇄기 설치 및 이용률 제고 방안

사. 이면지 사용에 대한 주의

아. 소프트 문서의 위조 및 훼손방지 방안

### ③ 사이버 공간 관리

SNS상의 모든 사이버 공간 및 교회가 제공하는 사이버 공간(카페, 블로그 등)을 이용함으로써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가. 공지사항 등 알림판 게시 기간의 설정

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게시 자제(기도 제목 등)

다. 지적 재산권의 침해 행위 방지(퍼 나르기, 공유 등)

라. 기타 사이버 공간 이용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 방지 방안

## 제4조 [교회의 정보관리]

### ① 아이디 관리

아이디는 비밀번호 혹은 공인 인증서, 아이핀(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등을 사용하여 본인 여부를 구분하는 관리 체제를 마련한다.

### ② 개인 신상 정보 관리

개인의 신상정보는 필요한 최소의 정보를 수집하며 교회 사역으로 인하

여 발생하는 신상변동의 정보 등을 포함하여 관리한다.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개인정보는 수집 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받는다.

원활한 교회 사역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행한다.

④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교회 사역을 위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정보제공은 제공의 목적, 정보 범위 등을 규정하고 시행을 통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가. 개인정보의 위탁 및 양도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양도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방안을 강구 한다

나. 개인정보의 파기

언제 어떤 정보를 삭제할 것인지 규정한다.

⑤ 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방지책 마련

정보유출을 방지 하려는 솔루션(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설치 등 수단 및 절차를 마련한다.

⑥ 교회는 성도 개인 및 공동체가 생산한 수첩 등을 파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⑦ IT 정보시스템 안전관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 제5조 (공동체 정보관리)

### ① 공동체 수첩관리

- 가. 발행 및 배포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 나. 사용 후 수집 폐기 또는 폐기 방안을 공지한다.
- 다. 수첩 내용에 개인정보 사항을 극소화한다.

### ② 기도 제목 관리

- 가. 인적 사항 기재는 간단하게 이름만 표기
- 나. 폐기 시 완전히 분쇄 후 버린다.

### ③ 회의록 관리

- 가. 공식적인 교회 사이트 이용하여 관리한다.

### ④ SNS 안전이용

- 가. 공동체 카톡방, 밴드, 카페 등은 알림 공간 역할로만 사용한다.
- 나. 각종 미확인 정보를 전파하지 않는다.
- 다. 기도 제목 등 개인 정보 내용 등록 시 사생활 보호에 유의한다.

## 제6조 (정보안전관리 간단 수칙)

### ① 문서나 수첩 등을 버릴 때

- 가. 개인 정보나 교회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나. 교회의 문서 파기함을 이용한다.

### ② 교회 정보 시스템 이용 시

- 가.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 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은 다운로드 및 프린트를 자제하며 사용

후 반드시 삭제한다.

③ 인터넷이나 SNS를 사용 시

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내려받지 않는다.

나.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자신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다.

다. 자신이 창작한 정보가 아닌 것은 전파하거나 개인 블로그 및 카페에 올리지 않는다.

라. 이동저장 장치를 사용할 때 타인의 개인정보는 절대 저장하지 않는다.

마. 모든 문서 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 관리하다.

※ 각 캠퍼스별 비상 연락처

캠퍼스	연락처	주소
서빙고	02)3215-31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양재	02)570-711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피로31길 70
강동	02)475-9686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11, 12층)
부천	032)322-989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대전	042)825-36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64
남양주	031)595-9896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프라자 2-5층
수원	031)895-650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77번길 80
양지	031)311-817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인천	032)437-9686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평택	031)651-9680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 온누리교회 안전관리규정

**초판발행** 2018년 1월 1일

**펴낸곳** 온누리교회 안전관리분과위원회

**전화** 02-3215-3215

**편집·인쇄** (주)한솔에이팩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길 12 에이스테크노타워 306호

**전화** 02-863-7733

**E-mail** apex7733@hanmail.net